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방안
표지면지

연구진

이 상 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종 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4
제3절 연구방법	5
제2장 불교부단체의 세입·세출구조	7
제1절 불교부단체의 재정현황	9
1.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현황	9
2. 불교부단체의 재정자립도	10
제2절 불교부단체의 세입구조와 추이	13
1. 불교부단체의 세입추이	13
2. 불교부단체의 세입구조	15
제3절 불교부단체의 세출구조와 추이	17
1. 불교부단체의 세출추이	17
2. 불교부단체의 세출구조	19
제3장 불교부단체의 재정운영 실태	21
제1절 불교부단체의 경상경비 운영	23
1. 불교부단체의 경상비 추이	23
2. 불교부단체의 경상비 구조	24
제2절 불교부단체의 민간이전비 예산 운용	29
1. 민간이전비 지출	29
2. 민간경상이전경비의 지출	33
3. 민간자본이전 지출	37
제3절 불교부단체의 행사·축제성 예산 운용	40

제4절 불교부단체의 대규모 건물 건립	44
제5절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 자체노력	47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제도	47
2. 경상경비절감운영	48
3. 지방청사관리운영	49
4. 지방세징수율	50
5. 주민세개인균등화	51
6. 지방채무의 증가와 관리	52

제4장 불교부단체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 전시·선심성 예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55
제1절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전시·선심성 예산 지원	57
제2절 빈번한 축제개최와 축제예산의 과다	59
제3절 상대적으로 낮은 세입 지구노력	60
제4절 높은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62
제5절 과도한 업무추진비 지출	64

제5장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관리방안

제1절 기본방향	69
제2절 자율적 재정통제 기반의 확충	73
제3절 민간이전비의 운영시스템 개선 : 선심성 경비의 총액실링제 도입	76
1. 예산과목 구분의 합리화	79
2. 민간이전비 심의기구의 설치 및 기능강화	80
3. 민간이전비 운영의 합리화 및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법적근거 마련	81



차 례

4. 민간지원경비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81
제4절 특별재정보전금·가산교부금제도의 확대 실시	82
제5절 지방재정 수지악화에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강화	85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89
제1절 요약	91
1. 불교부단체의 재정운영 특징	91
2. 불교부단체별 재정운영 특징	92
제2절 정책건의	95
참고문헌	98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1-1>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수	5
<표 2-1>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현황(2000년 이후)	9
<표 2-2> 불교부단체 재정력지수 추이(2000년 이후)	10
<표 2-3> 불교부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12
<표 2-4> 불교부단체 세입추이	13
<표 2-5> 불교부단체 1인당 세입추이	15
<표 2-6> 불교부 市와 전체 市의 세입추이	16
<표 2-7> 불교부단체 세출추이	18
<표 2-8> 불교부단체 1인당 세출추이	19
<표 2-9> 불교부 市와 전체 市의 세출구조와 추이	20
<표 3-1> 불교부단체 경상비 추이	24
<표 3-2> 불교부단체 경상비 세출대비 비중 추이	25
<표 3-3> 불교부단체 1인당 경상비 추이	26
<표 3-4> 불교부 市와 전체 市의 경상비구조와 추이	27
<표 3-5> 불교부단체 민간이전경비 추이	30
<표 3-6> 불교부단체 민간이전경비 세출대비 비중 추이	31
<표 3-7> 불교부단체 1인당 민간이전경비 추이	32
<표 3-8> 불교부단체 민간경상이전경비 추이	34
<표 3-9> 불교부단체 민간경상이전경비 세출대비 비중 추이	35
<표 3-10> 불교부단체 1인당 민간경상이전경비 추이	36
<표 3-11> 불교부단체 민간자본이전경비 추이	37
<표 3-12> 불교부단체 민간자본이전경비 세출대비 비중 추이	39
<표 3-13> 불교부단체 1인당 민간자본이전경비 추이	40
<표 3-14> 불교부단체 행사·축제성경비 추이	41
<표 3-15> 불교부단체 행사·축제성경비 세출대비 비중 추이	42
<표 3-16> 불교부단체 1인당 행사·축제성경비 추이	43
<표 3-17> 신축증 자치단체 청사 현황(2010. 1 현재)	45
<표 3-18>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신청사 건립현황	46
<표 3-19>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항목	47



표 차례

<표 3-20> 자치단체별 경상경비절감 노력 규모	49
<표 3-21> 자치단체별 청사규모	50
<표 3-22> 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율 추이	51
<표 3-23> 불교부단체 추이	52
<표 3-24> 자치단체별 지방채무 추이	53
<표 4-1> 민간경상이전 항목별 추이	58
<표 4-2> 불교부단체 축제 현황	60
<표 4-3> 불교부단체 세입 자체노력 분석	61
<표 4-4> 불교부단체 기본적 세출수요 비중	63
<표 4-5> 불교부단체 업무추진비 현황	64
<표 5-1> 현재 운영중인 지방재정관리제도	71
<표 5-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통제(관리)제도	73
<표 5-3> 민간지원경비 과목구분의 개편(안)	80
<표 5-4>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	83
<표 5-5>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현황	86

그림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림 2-1> 불교부단체 평균 재정자립도(2002-2009년 평균) · 11
<그림 2-2> 전체 市의 세입구조와 추이 16
<그림 2-3> 불교부 市의 세입구조와 추이 16
<그림 2-4> 전체 市의 세출구조와 추이 20
<그림 2-5> 불교부 市의 세출구조와 추이 20
<그림 3-1> 전체 市의 경상비구조와 추이 28
<그림 3-2> 불교부 市의 경상비구조와 추이 28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전반적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으나,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서민생활과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보장, 국가적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재산관련 지방세 수입의 증가율 둔화 추세
 - 내국세수입 규모에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의 증가 미약
 - 종합부동산세의 세수감소로 인한 부동산교부세의 대폭 감소
- 최근 지방재정의 운영측면에서의 자율성은 크게 제고되었으나 재정책임성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고,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통제 미흡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과 낭비사태가 많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다양한 예산낭비와 비리의 발생
 - 민간경상이전비의 증가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빚을 내거나 과도한 예산낭비로 비춰지는 전시성의 호화청사 건립과 행사·축제의 개최
 - 호화청사 건립 : 성남, 용인 등
 - 행사축제성 경비 : 일반시 보다 높으며, 특히, 수원, 과천, 화성 등
 -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무리한 복지사업비 지출
 - 세입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복지비 인상
 - 순수한 주민사업은 외면하면서도 부실한 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 보통교부세 산정시 불교부단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16억원~330억원(2010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보정) 반영되고 있으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로 인해 자구노력의 보상기제로 작용하지 못함
 - 특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이러한 예산의 비효율과 낭비에 대한 통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의 자율적 통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불교부단체의 경우, 자치단체 장의 정치적 입지강화와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심성, 전시성 관련 낭비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에 있음
- 본 연구는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비효율적 재정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제2절 연구범위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범위 설정
 - 특정연도 보다 결산자료가 확보가능한 7개 연도('02~'08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함
 - 광역자치단체(3)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9)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 화성시
 - 지방교부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써 자치구에만 적용되는 조정교부금의 불교부단체는 서울시의 4개 자치구((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종로구)에 한정되므로 연구범위에서 제외

〈표 1-1〉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수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불교부단체	10	10	10	11	11	12	11	10	7	8
시·도	2	2	2	3	3	3	3	2	1	1
시·군	8	8	8	8	8	9	8	8	6	7

- **현행 제도상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정(관리)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검토** → 불교부단체에 대한 적용상의 고려사항 도출
 - 사전적 관리제도 :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융자심사제도, 지방비부담협의제도, 지방채발행제도,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사업예산제도
 - 사후적 관리제도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인센티브제도,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제3절 연구방법

- **이론적 접근** : 각종 문헌연구와 외국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과 시사점 도출
- **경험적 접근** : 현행 예산지출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그 운영상 특징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합리적 재정(관리)통제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방법**은 ① 문헌조사(선행연구 및 외국사례), ② 전문가 자문 및 실무자 협의(정책대안의 평가), ③ 통계분석(현행 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활용함.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간의 비교분석
 - 경기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간의 비교분석
 - 결산(2002~2008) 및 예산의 시계열 자료 활용

제 2 장

불교부단체의 세입·세출구조

- 제1절 불교부단체의 재정현황
- 제2절 불교부단체의 세입구조와 추이
- 제3절 불교부단체의 세출구조와 추이



제2장

불교부단체의 세입·세출구조

제1절 불교부단체의 재정현황

1.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현황

- 2000년 이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산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2000년에는 서울, 인천, 경기,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 용인 등 10개 단체였으나, 2010년에는 서울,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창원 등 8개 단체임

〈표 2-1〉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현황(2000년 이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단체수	10	10	10	10	11	11	12	11	10	7	8	
광역	서울	○	○	○	○	○	○	○	○	○	○	
	인천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기초	수원	○	○	○	○	○	○	○	○	○	○	○
	성남	○	○	○	○	○	○	○	○	○	○	○
	안양	○	○	○	○	○	○	○	○	○	×	×
	부천	×	○	○	○	○	○	○	×	×	×	×
	안산	○	○	○	○	○	○	○	○	○	×	×
	고양	○	○	○	○	○	○	○	○	○	○	○
	과천	○	○	○	○	○	○	○	○	○	○	○
	용인	○	○	○	○	○	○	○	○	○	○	○
	화성	×	×	×	×	×	×	○	○	○	○	○
	창원	×	×	×	×	×	×	×	×	×	×	○

주: 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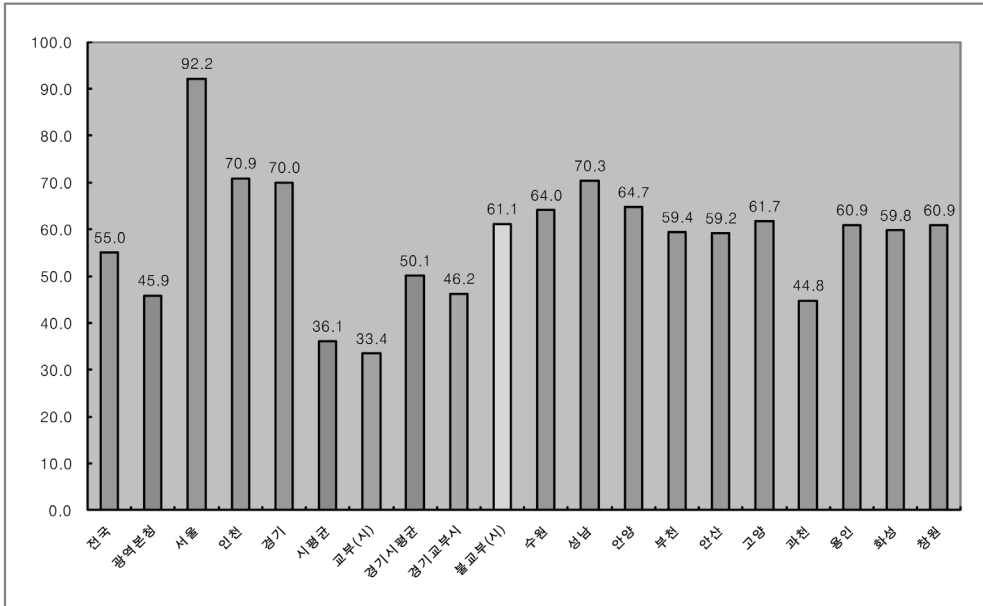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 경기도가 최근 교부단체로 전환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안양, 부천, 안산 등이 교부단체로 전환되었음
 - 반면 최근 들어 화성, 창원이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로 새롭게 전환되었음
- 재정력지수의 추이를 통해 불교부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서울을 비롯한 10개 자치단체는 불교부단체로 파악할 수 있음
- 안양, 부천, 안산의 경우 최근 들어 재정력지수가 0.90미만에 머물고 있어 타 불교부단체에 비해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교부단체로 전환됨

〈표 2-2〉 불교부단체 재정력지수 추이(2000년 이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단체수	10	10	10	10	11	11	12	11	10	7	8	
광역	서울	1.316	1.267	1.146	1.105	1.271	1.106	1.088	1.010	1.007	1.011	1.011
	인천	1.148	0.976	0.965	0.992	1.106	1.105	1.040	1.011	0.985	0.955	0.921
	경기	1.315	1.249	1.220	1.294	1.121	1.004	1.065	1.032	1.028	0.992	0.984
기초	수원	1.196	1.335	1.321	1.480	1.547	1.254	1.131	1.090	1.272	1.081	1.012
	성남	1.058	1.140	1.381	1.414	1.446	1.433	1.796	1.524	1.574	1.554	1.261
	안양	1.055	1.021	1.108	1.072	1.170	1.020	1.041	1.006	1.009	0.922	0.853
	부천	0.998	1.041	1.093	1.092	1.281	1.252	1.032	0.909	0.796	0.765	0.779
	안산	1.022	1.033	1.040	1.311	1.371	1.109	1.120	1.020	1.012	0.855	0.740
	고양	1.016	1.145	1.282	1.256	1.449	1.233	1.134	1.048	1.136	1.141	1.016
	과천	1.105	1.040	1.250	1.219	2.751	2.650	1.802	1.160	1.035	1.694	1.681
	용인	1.119	1.359	1.536	1.905	1.973	2.392	2.522	1.884	1.891	1.667	1.205
	화성	0.802	0.747	0.713	0.700	0.831	0.873	1.269	1.434	1.182	1.455	1.630
	창원	0.948	0.883	0.890	0.886	0.974	0.935	0.859	0.751	0.784	0.884	1.214

2. 불교부단체의 재정자립도

- 분석기간('02~'09) 동안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재정자립도는 55.0%로 전반적으로 재정자립수준이 낮음



〈그림 2-1〉 불교부단체 평균 재정자립도(2002-2009년 평균)

- 반면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를 상회하고 있는데,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재정자립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동안 평균 92.2%의 높은 재정자립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천(70.9%), 경기(70.0%)의 경우에도 광역본청 평균 재정자립도 45.9%에 비해 높은 재정자립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불교부단체 가운데 일반시의 경우에는 불교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재정자립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 일반시의 평균적인 재정자립수준인 36.1%에 비해서는 높은 재정자립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과천시 경우에는 전국 일반시의 평균적인 재정자립수준은 상회하나 경기도의 일반시 평균 재정자립도인 50.1%에는 미치지 못함

-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
 - 불교부단체 가운데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2002년의 서울 94.7%, 인천 73.1%, 경기 70.1% 수준에서 2008년에는 서울 85.7%, 인천 71.2%, 경기 66.1%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불교부단체 가운데 시지역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불교부단체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전반적인 하락은 최근에 단행된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확충에 그 원인이 있음

〈표 2-3〉 불교부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전국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5.0
광역본청	46.3	48.6	48.3	47.1	46.4	44.7	43.5	42.0	45.9
서울	94.7	95.1	94.5	95.0	93.3	88.7	85.7	90.4	92.2
인천	73.1	73.8	70.8	66.3	68.3	67.7	71.2	75.7	70.9
경기	70.1	75.8	78.0	70.3	68.8	66.5	66.1	64.1	70.0
시합계	37.1	34.6	35.1	36.8	36.0	35.6	36.6	36.8	36.1
교부(시)	34.3	32.3	32.6	34.1	33.2	32.9	33.8	33.8	33.4
경기시계	52.8	46.9	47.1	50.9	50	48.6	51.1	53.3	50.1
경기교부시	49.3	43.8	43.1	46.9	45.9	44.3	47.1	49.3	46.2
불교부(시)	62.9	55.7	58.6	62.3	61.6	60.9	62.5	64.7	61.1
수원	68.9	58.4	63.0	64.8	65.6	62.5	63.1	65.9	64.0
성남	70.8	62.7	70.4	70.2	72.4	71.7	74.0	70.5	70.3
안양	68.0	64.1	65.3	66.9	62.7	60.8	64.6	65.3	64.7
부천	65.5	55.4	58.7	64.4	62.0	56.5	59.1	53.4	59.4
안산	63.3	54.3	59.3	62.9	62.8	55.3	58.0	57.3	59.2
고양	67.6	59.3	60.2	61.2	60.6	61.6	60.6	62.2	61.7
과천	42.1	39.3	37.3	43.9	48.2	48.4	48.3	50.9	44.8
용인	57.1	51.8	54.3	63.7	56.4	63.8	67.2	72.9	60.9
화성	55.6	56.0	46.2	64.0	63.6	63.0	63.8	65.8	59.8

제2절 불교부단체의 세입구조와 추이

1. 불교부단체의 세입추이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02년 84조 5,082억원에서 2008년 133조 400억원으로 연평균 6.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2002년 21조 6,724억원에서 2008년 33조 3,764억원으로 연평균 6.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2-4〉 불교부단체 세입추이

(단위: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84,508,229	96,503,974	97,230,960	99,714,240	109,090,416	118,242,810	133,040,046	6.7
광역본청	21,672,453	24,117,007	24,139,884	24,558,363	27,120,493	30,798,310	33,376,395	6.4
서울	10,564,461	11,924,703	11,798,320	11,484,357	12,108,033	13,798,310	14,792,752	4.9
인천	2,055,636	2,299,407	2,507,351	2,753,770	3,195,472	3,544,832	3,907,972	9.6
경기	7,776,945	8,439,250	8,254,909	8,527,770	10,001,579	10,464,054	10,625,527	4.6
시합계	28,355,106	33,997,371	13,095,372	35,531,673	36,938,599	40,507,302	46,098,159	7.2
교부(시)	23,029,311	27,865,922	6,571,178	29,261,901	29,660,232	33,178,869	38,225,175	7.5
경기시계	9,981,038	12,138,887	13,095,372	13,299,331	14,170,249	16,163,124	17,901,552	8.7
경기교부시	4,655,243	6,007,438	6,571,178	7,029,559	6,891,882	8,834,691	10,028,568	11.6
불교부(시)	5,325,795	6,131,449	6,524,194	6,269,772	7,278,367	7,328,433	7,872,984	5.7
수원	887,976	1,016,710	1,155,237	1,017,710	1,041,855	1,066,915	1,294,212	5.5
성남	718,739	943,931	1,131,325	1,236,591	1,265,178	1,478,605	1,422,578	10.2
안양	525,701	556,294	558,824	541,069	566,758	619,915	685,039	3.9
부천	658,188	851,800	801,516	722,429	780,456	1,041,776	1,148,780	8.3
안산	645,960	700,279	721,861	673,090	746,426	737,038	788,011	2.9
고양	804,153	818,211	834,217	779,392	851,506	1,022,221	1,076,911	4.3
과천	246,478	230,255	226,420	213,434	217,791	245,757	255,982	0.5
용인	838,600	1,013,969	1,094,794	1,086,057	1,201,369	1,364,494	1,330,021	6.8
화성	347,856	463,619	526,609	570,313	607,028	793,488	1,020,230	16.6

- 시지역의 경우에는 2002년 28조 3,551억원에서 2008년 46조 982억원으로 연평균 7.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교부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일반시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8.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불교부단체들의 일반회계 세입 증가세를 살펴보면, 광역본청의 경우 인천(9.6%)을 제외한 서울(4.9%), 경기(4.6%)의 경우 전국 평균 증가세보다 낮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성남(10.2%), 화성(16.6%)을 제외한 나머지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전국 시평균 및 경기도 평균 증가세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교부시 평균(7.5%) 및 경기도의 교부시 평균(11.6%)보다 낮음
- 불교부단체의 세입추이 분석결과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부자치단체가 동급의 교부단체에 비해 세입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과천시를 제외한 불교부 시의 세입규모는 1조원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주민 1인당 세입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전국 평균 1,752천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2,685천원으로 연평균 6.3%의 증가세를 보임
 - 분석기간 동안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연평균 6.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지역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보다 낮은 5.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시지역의 경우 6.2%의 증가세를 보임
- 불교부단체의 1인당 세입추이를 살펴보면, 광역본청의 경우 인천(8.9%)을 제외한 서울(4.9%), 경기(2.7%)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시지역의 경우에도 불교부단체의 1인당 세입 증가율(5.3%)이 전국의 1인당 세입 증가율(5.7%) 및 경기지역 1인당 시평균 세입증가율(6.2%)보다 낮음
- 불교부단체의 1인당 세입추이 분석결과도 세입규모추이 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부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부단체의 1인당세입 증가율이 교부단체의 1인당 세입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5〉 불교부단체 1인당 세입추이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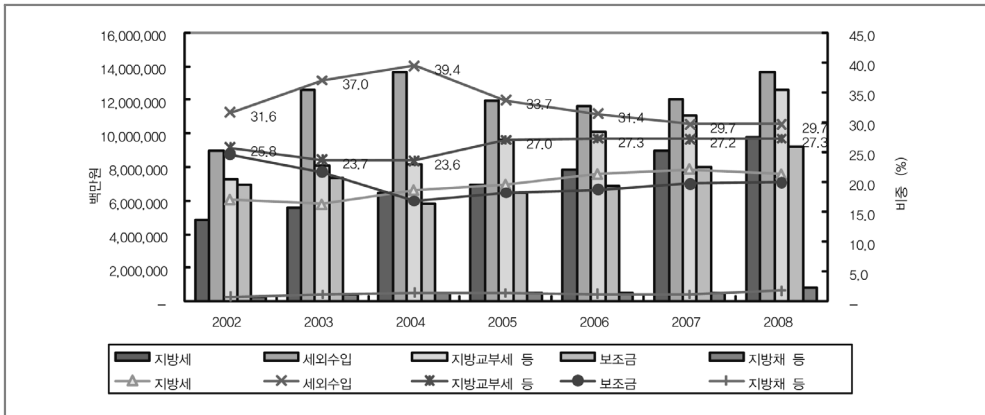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1,752,194	1,994,427	2,001,304	2,044,067	2,226,709	2,399,947	2,685,488	6.3
광역본청	449,357	498,421	496,871	503,428	553,572	625,106	673,721	6.0
서울	1,034,991	1,172,066	1,159,750	1,129,534	1,189,258	1,353,743	1,450,152	4.9
인천	797,380	894,643	972,287	1,058,941	1,217,605	1,330,355	1,451,323	8.9
경기	783,376	826,822	788,968	797,195	917,068	942,180	940,956	2.7
시합계	1,397,993	1,626,144	618,054	1,656,161	1,690,883	1,834,593	2,063,607	5.7
교부(시)	1,550,925	1,821,218	425,629	1,874,902	1,903,559	2,002,415	2,285,402	5.7
경기시계	1,068,795	1,224,354	1,287,554	1,278,114	1,335,080	1,495,186	1,628,525	6.2
경기교부시	1,192,238	1,394,326	1,486,212	1,542,125	1,584,524	1,666,981	1,864,163	6.6
불교부(시)	980,094	1,093,723	1,134,779	1,072,292	1,161,883	1,329,953	1,402,676	5.3
수원	870,811	984,284	1,117,435	973,338	974,693	999,263	1,212,462	4.8
성남	763,825	981,168	1,157,761	1,257,881	1,311,295	1,549,965	1,509,451	10.2
안양	883,320	920,247	899,810	865,226	907,859	993,140	1,104,405	3.2
부천	806,110	1,008,936	936,682	844,592	907,486	1,205,708	1,323,970	7.3
안산	1,027,190	1,074,666	1,082,601	991,280	1,068,125	1,045,385	1,112,606	1.1
고양	961,142	945,824	941,554	862,086	935,509	1,105,296	1,147,077	2.6
과천	3,496,737	3,274,202	3,313,480	3,501,444	3,600,923	3,945,305	3,684,414	0.7
용인	1,595,443	1,762,643	1,709,408	1,565,691	1,567,203	1,704,991	1,628,405	0.3
화성	1,532,878	1,962,608	1,939,178	1,923,289	1,957,075	2,133,193	2,270,437	5.8

2. 불교부단체의 세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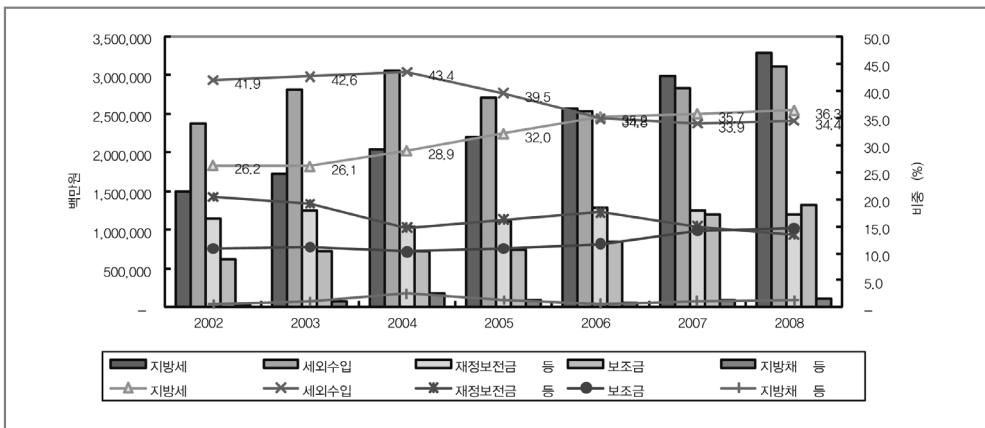
-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인 9개 시와 전국 시의 세입구조를 비교하면, 지방세와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비중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분석기간 동안(2002~2008) 전체 시는 지방세 보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세입구조로 되어 있음(<그림 2-2>참조).
 - 반면, 불교부단체는 <그림 2-3>에서 보듯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심의 세입구조로 되어 있고, 이전재원도 중앙정부 보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최근 보조금의 증가는 사회복지 등의 보조사업 확대에 기인하고 있음.

〈표 2-6〉 불교부 市와 전체 市의 세입추이 (단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전체 市	지방세	17.1	16.3	18.7	19.6	21.3	22.2	21.3	19.5
	세외수입	31.6	37.0	39.4	33.7	31.4	29.7	29.7	33.2
	지방교부세 등	25.8	23.7	23.6	27.0	27.3	27.2	27.3	26.0
	보조금	24.6	21.7	16.8	18.2	18.7	19.7	19.9	20.0
	지방채 등	0.8	1.2	1.5	1.4	1.3	1.2	1.8	1.3
불교부 市	지방세	26.2	26.1	28.9	32.0	35.2	35.7	36.3	31.5
	세외수입	41.9	42.6	43.4	39.5	34.8	33.9	34.4	38.6
	재정보전금 등	20.3	19.1	14.8	16.2	17.6	15.0	13.3	16.6
	보조금	10.9	11.1	10.3	10.9	11.7	14.2	14.7	12.0
	지방채 등	0.6	1.2	2.6	1.4	0.7	1.2	1.3	1.3



〈그림 2-2〉 전체 市의 세입구조와 추이



〈그림 2-3〉 불교부 市의 세입구조와 추이

제3절 불교부단체의 세출구조와 추이

1. 불교부단체의 세출추이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02년 54조 7,919억원에서 2008년 98조 3,956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하여 세입 증가율 6.7%보다 빠르게 증가함
 -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2002년 17조 5,526억원에서 2008년 30조 8,370억원으로 연평균 8.4%의 증가세를 보여 세입증가율 6.4%보다 2%p 더 높음
 - 시지역의 경우에는 2002년 18조 5,528억원에서 2008년 35조 241억원으로 연평균 9.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교부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일반시의 경우에는 이 보다 더 높은 10.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불교부단체들의 일반회계 세출 증가세를 살펴보면, 광역본청의 경우 인천(11.4%)을 제외한 서울(7.9%), 경기(6.0%)의 경우 광역본청 평균 증가세보다 낮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성남(12.2%), 용인(11.8%), 화성(21.1%)을 제외한 나머지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전국 시평균 및 경기도 평균 증가세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화성을 제외한 나머지 불교부 시의 세출 증가율은 경기도의 교부 시의 평균 세출 증가율(13.0%)보다 낮음

- 불교부단체의 세출추이 분석결과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부자치단체가 동급의 교부단체에 비해 세출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 불교부단체 세출추이

(단위: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54,791,904	65,026,972	71,794,574	74,635,603	79,738,529	86,881,392	98,395,563	8.7
광역본청	17,552,654	20,070,278	22,118,286	23,040,889	23,855,041	27,067,068	30,837,030	8.4
서울	8,156,828	9,681,242	11,002,273	11,157,472	10,387,946	12,302,690	13,913,465	7.9
인천	1,736,164	1,916,000	2,251,090	2,468,441	2,785,668	3,148,650	3,702,494	11.4
경기	6,675,024	7,535,141	7,660,862	7,959,619	9,003,555	9,619,264	10,029,721	6.0
시합계	18,552,869	23,080,011	25,126,525	26,692,428	28,323,791	30,428,008	35,024,086	9.5
교부(시)	15,028,600	19,075,895	20,317,287	21,852,929	22,652,186	24,673,303	28,662,795	9.7
경기시계	6,620,881	7,938,873	9,381,417	10,063,902	10,825,597	11,982,894	13,628,642	10.9
경기교부시	3,096,612	3,934,757	4,572,179	5,224,403	5,153,992	6,228,189	7,267,351	13.0
불교부(시)	3,524,269	4,004,116	4,809,238	4,839,499	5,671,605	5,754,705	6,361,291	8.8
수원	595,239	667,419	918,433	940,433	885,362	859,178	1,024,209	8.1
성남	514,704	609,686	767,882	866,113	935,625	1,212,339	1,154,396	12.2
안양	342,121	387,920	396,469	415,745	444,081	478,835	552,441	7.1
부천	468,128	536,691	576,999	574,446	605,687	684,116	819,681	8.3
안산	381,970	444,331	527,794	515,452	601,574	615,694	645,520	7.8
고양	531,089	557,417	647,415	617,862	667,582	774,453	819,762	6.4
과천	170,894	143,102	152,958	142,370	145,788	178,447	195,554	1.9
용인	520,124	657,550	821,288	767,078	909,695	1,025,782	1,136,183	11.8
화성	218,345	300,390	378,603	424,745	476,211	609,977	833,226	21.1

□ 주민 1인당 세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전국 평균 1,136천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986천원으로 연평균 8.3%의 증가세를 보임

- 분석기간 동안 광역본청과 시지역의 경우에는 연평균 8.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시지역의 경우 이 보다 약간 높은 8.3%의 증가세를 보임

□ 불교부단체의 1인당 세출추이를 살펴보면, 광역본청의 경우 인천(10.7%)을 제외한 서울(7.9%), 경기(4.1%)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시지역의 경우에는 불교부단체의 1인당 세출 증가율(8.3%)이 전국 시지역 평균 1인당 세출 증가율(8.0%) 및 경기지역 시평균 1인당 세입증가율(8.3%)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성남(12.2%)과 화성(9.8%)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2-8〉 불교부단체 1인당 세출추이

(단위: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1,136,056	1,343,898	1,477,747	1,529,974	1,627,590	1,763,411	1,986,169	8.3
광역본청	363,937	414,788	455,260	472,321	486,919	549,374	622,463	8.0
서울	799,117	951,559	1,081,500	1,097,383	1,020,310	1,207,009	1,363,955	7.9
인천	673,457	745,469	872,916	949,220	1,061,453	1,181,670	1,375,014	10.7
경기	672,379	738,243	732,192	744,083	825,557	866,116	888,194	4.1
시합계	914,713	1,103,950	1,185,881	1,244,156	1,296,536	1,378,098	1,567,870	8.0
교부(시)	1,012,111	1,246,732	1,315,992	1,400,185	1,453,791	1,489,087	1,713,686	7.8
경기시계	708,981	800,732	922,393	967,177	1,019,957	1,108,490	1,239,813	8.3
경기교부시	793,062	913,258	1,034,095	1,146,113	1,184,963	1,175,172	1,350,892	7.9
불교부(시)	648,564	714,251	836,490	827,679	905,388	1,044,355	1,133,348	8.3
수원	583,733	646,133	888,380	899,431	828,288	804,698	959,514	7.4
성남	546,991	633,738	785,826	881,024	969,729	1,270,849	1,224,892	12.2
안양	574,856	641,715	638,388	664,820	711,349	767,122	890,633	6.5
부천	573,336	635,697	674,303	671,585	704,271	791,767	944,683	7.4
안산	607,400	681,881	791,552	759,122	860,844	873,275	911,421	6.0
고양	634,770	644,355	730,717	683,417	733,441	837,392	873,173	4.7
과천	2,424,441	2,034,896	2,238,421	2,335,619	2,410,436	2,864,732	2,814,658	2.2
용인	989,540	1,143,058	1,282,357	1,105,841	1,186,710	1,281,756	1,391,080	5.0
화성	962,169	1,271,621	1,394,163	1,432,385	1,535,318	1,639,847	1,854,275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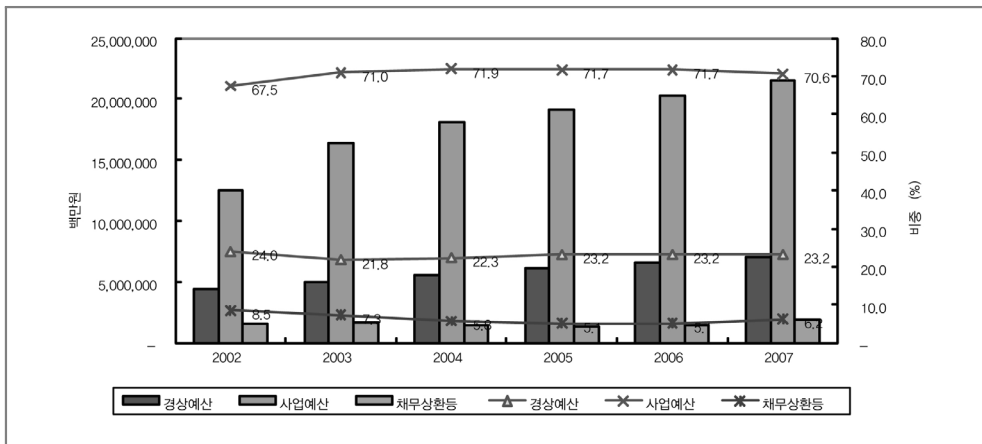
2. 불교부단체의 세출구조

- 보통교부세의 교부단체인 9개 시와 전국 시의 세출구조를 비교하면 큰 차이점은 없음.
- 분석기간 동안(2002~2008) 전체 시는 사업예산의 비중이 불교부 시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불교부 시는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던 지방채의 상환 등에 다소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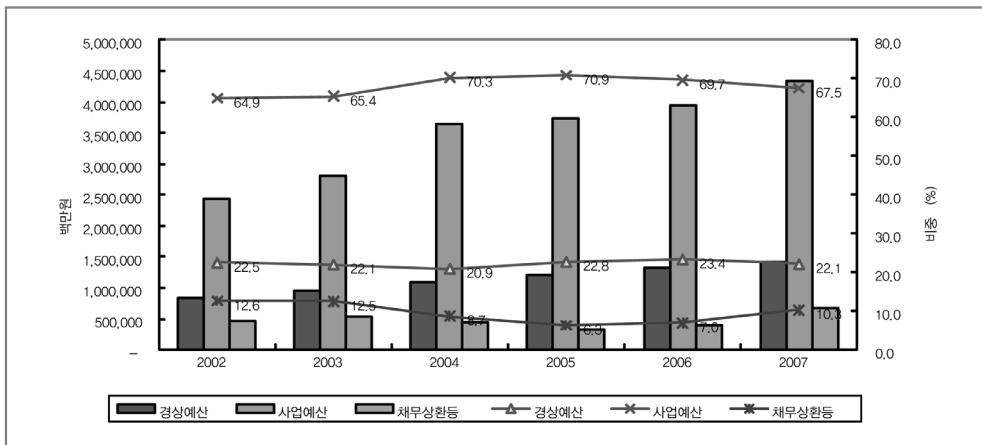
〈표 2-9〉 불교부 市와 전체 市의 세출구조와 추이

(단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시	경상예산	24.0	21.8	22.3	23.2	23.2	23.2
	사업예산	67.5	71.0	71.9	71.7	71.7	70.6
	채무상환등	8.5	7.3	5.8	5.1	5.1	6.2
불교부 시	경상예산	22.5	22.1	20.9	22.8	23.4	22.1
	사업예산	64.9	65.4	70.3	70.9	69.7	67.5
	채무상환등	12.6	12.5	8.7	6.3	7.0	10.3



〈그림 2-4〉 전체 市의 세출구조와 추이



〈그림 2-5〉 불교부 市의 세출구조와 추이

제 3 장

불교부단체의 재정운영 실태

- 제1절 불교부단체의 경상경비 운영
- 제2절 불교부단체의 민간이전비 예산 운용
- 제3절 불교부단체의 행사·축제성 예산 운용
- 제4절 불교부단체의 대규모 건물 건립
- 제5절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 자체노력



제3장

불교부단체의 재정운영 실태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재정운영에 있어 특히 비효율적,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대규모 건물 건립(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도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함

제1절 불교부단체의 경상경비 운영

1. 불교부단체의 경상비 추이

- 경상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상비 지출은 2002년 23조 6,339억원에서 2008년 50조 3,855억원으로 연평균 11.4%의 증가세를 보임
 -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2002년 8조 370억원에서 2008년 16조 770억원으로 연평균 10.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시지역의 경우에는 2002년 7조 9,758억원에서 2008년 18조 5,546억원으로 연평균 12.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교부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일반시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이 보다 높은 15.1%의 증가세를 보임
- 불교부단체들의 경상비 지출규모의 증가세를 살펴보면, 광역본청의 경우 인천이 12.6%로 광역본청 평균 증가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은 10.9%로 비슷한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도는 8.1%로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용인(20.4%), 화성(22.8%)의 경우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전국 시평균과 경기도 평균 사이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 불교부단체 경상비 추이

(단위: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23,633,913	25,845,290	29,625,644	34,405,013	39,242,330	43,569,286	50,385,478	11.4
광역본청	8,037,053	9,309,991	10,176,651	10,771,072	11,938,314	13,830,980	16,077,071	10.4
서울	3,286,151	4,234,445	4,601,805	4,458,298	4,783,736	5,703,790	6,786,349	10.9
인천	820,329	866,036	968,005	1,115,272	1,403,946	1,647,079	1,880,189	12.6
경기	3,160,052	3,349,297	3,405,298	3,796,106	4,538,467	5,132,752	5,458,549	8.1
시합계	7,975,860	9,077,968	10,600,400	12,393,749	14,055,060	16,034,383	18,554,608	12.8
교부(시)	6,489,894	7,395,597	8,569,071	10,078,487	11,175,743	13,078,058	15,147,373	12.9
경기시계	2,742,326	3,232,887	3,905,589	4,577,992	5,364,222	6,310,612	7,319,897	15.1
경기교부시	1,256,360	1,550,516	1,874,260	2,262,730	2,484,905	3,354,287	3,912,662	17.6
불교부(시)	1,485,966	1,682,371	2,031,329	2,315,262	2,879,317	2,956,325	3,407,235	12.6
수원	244,410	284,501	329,144	385,415	451,637	512,533	601,953	13.7
성남	267,980	290,847	357,767	424,641	470,673	554,910	644,129	13.3
안양	177,419	201,135	233,962	247,565	282,727	308,228	359,495	10.6
부천	251,993	272,261	323,757	336,933	377,228	420,943	488,280	9.9
안산	174,937	187,496	227,288	266,132	310,595	364,987	365,902	11.1
고양	182,519	209,313	269,746	310,637	361,231	426,678	498,521	15.4
과천	53,856	64,797	72,487	84,711	87,382	96,969	107,660	10.4
용인	132,852	172,021	217,178	259,228	328,349	419,689	486,845	20.4
화성	81,418	98,634	129,862	162,458	209,495	272,331	342,730	22.8

□ 불교부단체의 경상비추이 분석결과 용인, 화성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부자치단체가 동급의 교부단체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불교부단체의 경상비 규모가 교부단체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임.

2. 불교부단체의 경상비 구조

□ 세출대비 경상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광역본청의 경우 2002년 45.8%에서 2008년 52.1%로 증가하였으며, 시지역의 경우에도 2002년 43.0%에서 2008년 53.0%로 증가하였음

〈표 3-2〉 불교부단체 경상비 세출대비 비중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전국	43.1	39.7	41.3	46.1	49.2	50.1	51.2	45.8
광역본청	45.8	46.4	46.0	46.7	50.0	51.1	52.1	48.3
서울	40.3	43.7	41.8	40.0	46.1	46.4	48.8	43.9
인천	47.2	45.2	43.0	45.2	50.4	52.3	50.8	47.7
경기	47.3	44.4	44.5	47.7	50.4	53.4	54.4	48.9
시합계	43.0	39.3	42.2	46.4	49.6	52.7	53.0	46.6
교부(시)	43.2	38.8	42.2	46.1	49.3	53.0	52.8	46.5
경기시계	41.4	40.7	41.6	45.5	49.6	52.7	53.7	46.5
경기교부시	40.6	39.4	41.0	43.3	48.2	53.9	53.8	45.7
불교부(시)	42.2	42.0	42.2	47.8	50.8	51.4	53.6	47.1
수원	41.1	42.6	35.8	41.0	51.0	59.7	58.8	47.1
성남	52.1	47.7	46.6	49.0	50.3	45.8	55.8	49.6
안양	51.9	51.8	59.0	59.5	63.7	64.4	65.1	59.3
부천	53.8	50.7	56.1	58.7	62.3	61.5	59.6	57.5
안산	45.8	42.2	43.1	51.6	51.6	59.3	56.7	50.0
고양	34.4	37.6	41.7	50.3	54.1	55.1	60.8	47.7
과천	31.5	45.3	47.4	59.5	59.9	54.3	55.1	50.4
용인	25.5	26.2	26.4	33.8	36.1	40.9	42.8	33.1
화성	37.3	32.8	34.3	38.2	44.0	44.6	41.1	38.9

□ 불교부단체의 세출대비 경상비비중을 살펴보면, 서울(43.9%), 인천(47.7%)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광역본청 평균(48.3%)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48.9%)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세출대비 경상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교부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함.

□ 일반시 가운데 불교부단체의 경상비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47.1%로 전국시(46.6%) 및 경기시(46.5%) 평균과 비교하여 약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안양(59.3%), 부천(57.5%), 안산(50.0%), 과천(50.4%)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용인(33.1%), 화성(38.9%)은 상대적으로 경상비 비중이 낮은 수준임

□ 주민 1인당 경상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전국 평균 490천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017천원으로 연평균 11.0%의 증가세를 보임

- 분석기간 동안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연평균 10.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지역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보다 높은 11.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시지역의 경우 이 보다 높은 12.4%의 증가세를 보임

〈표 3-3〉 불교부단체 1인당 경상비 추이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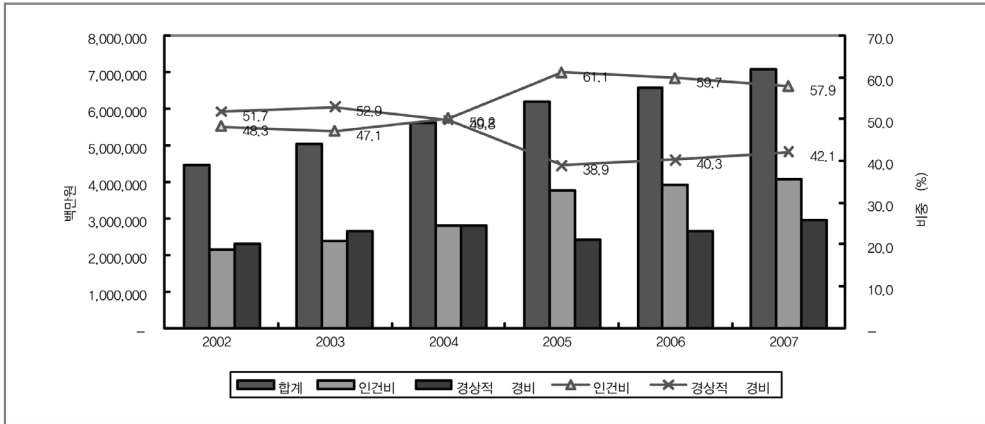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490,026	534,139	609,784	705,277	800,998	884,316	1,017,059	11.0
광역본청	166,640	192,408	209,466	220,799	243,680	280,724	324,525	10.0
서울	321,941	416,199	452,348	438,492	469,861	559,595	665,274	10.9
인천	318,205	336,954	375,368	428,869	534,961	618,139	698,255	11.9
경기	318,314	328,142	325,463	354,869	416,143	462,151	483,388	6.2
시합계	393,234	434,212	500,301	577,683	643,377	726,204	830,606	11.3
교부(시)	437,066	483,350	555,036	645,760	717,246	789,289	905,629	11.0
경기시계	293,655	326,076	384,002	439,961	505,402	583,769	665,900	12.4
경기교부시	321,762	359,875	423,904	496,390	571,309	632,907	727,306	12.4
불교부(시)	273,459	300,100	353,317	395,969	459,640	536,509	607,044	12.1
수원	239,686	275,427	318,374	368,611	422,523	480,034	563,930	13.0
성남	284,790	302,321	366,127	431,952	487,829	581,691	683,464	13.3
안양	298,112	332,727	376,722	395,882	452,885	493,799	579,570	10.0
부천	308,626	322,486	378,355	393,908	438,627	487,182	562,743	9.0
안산	278,181	287,736	340,872	391,941	444,457	517,683	516,623	9.2
고양	218,151	241,959	304,454	343,596	396,867	461,354	531,002	13.6
과천	764,045	921,407	1,060,791	1,389,707	1,444,760	1,556,710	1,549,578	10.6
용인	252,752	299,034	339,101	373,710	428,336	524,419	596,066	13.0
화성	358,780	417,541	478,202	547,864	675,418	732,128	762,717	11.4

- 불교부단체의 1인당 경상비추이를 살펴보면, 서울(10.9%), 인천(11.9%)은 광역본청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6.2%)는 평균 이하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시지역의 경우에는 불교부단체의 1인당 경상비 증가율(12.1%)이 전국의 1인당 경상비 증가율(11.3%) 보다 높으며, 특히 수원(13.0%), 성남(13.3%), 고양(13.6%), 용인(13.0%) 등의 증가율이 높음
- 불교부단체의 1인당 경상비추이 분석결과 일부 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부단체의 1인당 경상비 증가율이 교부단체의 1인당 경상비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통교부세의 불교부단체인 9개 시와 전국 시의 경상비 지출구조를 비교하면 큰 차이점은 없음.
- 분석기간 동안(2002~2008) 불교부 시는 교부 시에 비해 인건비 보다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다소 나타나는 반면, 교부 시는 경상적 경비 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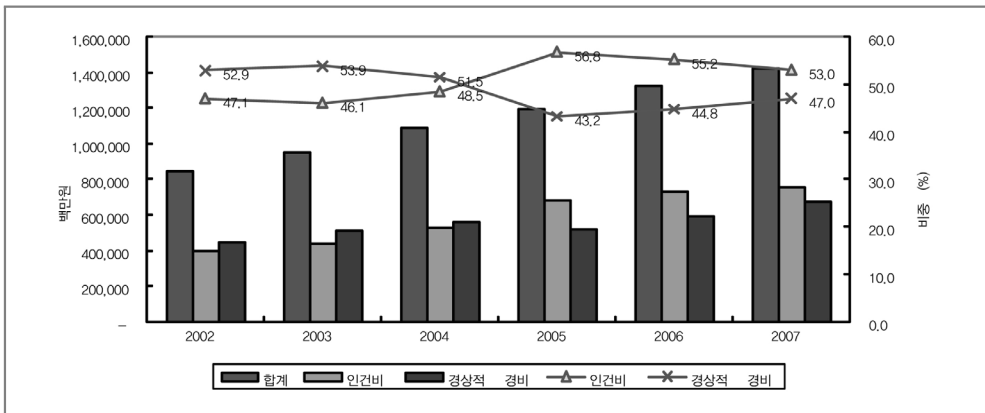
〈표 3-4〉 불교부 시와 전체 시의 경상비구조와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전체 시	합계	4,453,236	5,021,855	5,611,951	6,182,289	6,567,232	7,059,206	
	인건비	2,148,695	2,364,071	2,818,671	3,778,225	3,922,795	4,085,914	
	경상적 경비	2,304,541	2,657,784	2,793,280	2,404,064	2,644,437	2,973,292	
	인건비	48.3	47.1	50.2	61.1	59.7	57.9	54.0
	경상적 경비	51.7	52.9	49.8	38.9	40.3	42.1	46.0
불교부 시	합계	841,674	949,266	1,086,426	1,197,933	1,326,367	1,425,884	
	인건비	396,108	437,938	527,071	679,948	732,644	755,559	
	경상적 경비	445,566	511,328	559,355	517,985	593,723	670,325	
	인건비	47.1	46.1	48.5	56.8	55.2	53.0	51.1
	경상적 경비	52.9	53.9	51.5	43.2	44.8	47.0	48.9



〈그림 3-1〉 전체 市의 경상비구조와 추이



〈그림 3-2〉 불교부 市의 경상비구조와 추이

제2절 불교부단체의 민간이전비 예산 운용

- ※ 본 연구에서는 민간이전경비¹⁾ 가운데 선심성·전시성 성격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민간자본보조(402-01), 민간대행사업비(402-02)를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함
- ※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적 댓가의 요구없이 자치단체가 민간부문에 지출하는 자금을 의미함

1. 민간이전비 지출

-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는 2002년 4조 8,324억원에서 2008년 12조 1,961억원으로 연평균 14.1%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2002년 8,662억원에서 2008년 1조 4,239억원으로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시지역의 경우에는 2002년 1조 5,018억원에서 2008년 4조 5,085억원으로 연평균 17.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교부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일반시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이 보다 높은 21.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불교부단체들의 민간이전경비 증가세를 살펴보면, 광역본청 가운데 인천이 18.1%로 광역본청 평균(7.4%) 증가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3.1%와 6.3%로 평균 이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교부단체의 민간이전경비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22.6%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남(27.2%), 고양(28.7%), 화성(27.4%)의 경우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1) 민간이전경비는 민간경상이전과 민간자본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는 민간경상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307-01),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민간위탁금(307-05), 보험금(307-06), 연금지급금(307-07), 이차보전금(307-08), 운수업체보조금(307-09)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402-01), 민간대행사업비(402-02)로 구성됨

□ 불교부단체의 민간이전경비추이 분석결과 서울,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3-5〉 불교부단체 민간이전경비 추이

(단위: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4,832,432	5,736,892	6,636,156	7,587,684	9,310,875	10,580,118	12,196,173	14.1
광역본청	866,266	842,422	788,470	949,338	1,220,693	1,276,722	1,423,986	7.4
서울	456,881	399,140	329,141	420,861	543,369	534,548	566,301	3.1
인천	69,137	93,332	93,547	114,392	164,298	207,775	221,741	18.1
경기	154,342	117,780	505,750	206,894	192,299	212,074	236,064	6.3
시합계	1,501,838	2,037,207	2,251,219	2,779,539	3,430,168	3,938,777	4,508,521	17.0
교부(시)	1,335,491	1,822,375	2,012,582	2,407,922	2,859,987	3,324,423	3,817,576	16.2
경기시계	434,375	564,972	696,828	925,037	1,255,009	1,483,774	1,680,466	21.3
경기교부시	268,028	350,140	458,191	553,420	684,828	869,420	989,521	20.5
불교부(시)	166,347	214,832	238,637	371,617	570,181	614,354	690,945	22.6
수원	38,698	42,151	44,680	72,699	101,270	130,463	138,411	20.0
성남	13,534	17,110	21,271	36,744	50,397	60,549	73,114	27.2
안양	20,624	25,692	27,480	44,521	60,005	72,771	75,416	20.3
부천	24,768	32,452	36,301	57,396	71,514	81,185	99,053	21.9
안산	13,295	19,530	18,839	27,843	41,762	53,139	50,076	20.9
고양	20,916	28,989	39,941	55,380	77,654	101,844	122,344	28.7
과천	6,020	8,051	9,356	10,073	11,948	10,438	20,019	18.7
용인	28,492	40,857	40,769	66,961	82,856	74,513	86,020	17.1
화성	22,991	26,087	42,189	43,453	72,775	110,637	125,545	27.4

□ 세출대비 민간이전경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2002년 4.9%에서 2008년 4.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일반 시의 경우에는 2002년 8.1%에서 2008년 12.9%로 증가하였으며, 경기 시의 경우에도 2002년 6.6%에서 2008년 12.3%로 증가하였음

〈표 3-6〉 불교부단체 민간이전경비 세출대비 비중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전국	8.8	8.8	9.2	10.2	11.7	12.2	12.4	10.5
광역본청	4.9	4.2	3.6	4.1	5.1	4.7	4.6	4.5
서울	5.6	4.1	3.0	3.8	5.2	4.3	4.1	4.3
인천	4.0	4.9	4.2	4.6	5.9	6.6	6.0	5.2
경기	2.3	1.6	6.6	2.6	0.6	2.2	2.4	2.6
시합계	8.1	8.8	9.0	10.4	12.1	12.9	12.9	10.6
교부(시)	8.9	9.6	9.9	11.0	12.6	13.5	13.3	11.3
경기시계	6.6	7.1	7.4	9.2	11.6	12.4	12.3	9.5
경기교부시	8.7	8.9	10.0	10.6	13.3	14.0	13.6	11.3
불교부(시)	4.7	5.4	5.0	7.7	10.1	10.7	10.9	7.8
수원	6.5	6.3	4.9	7.7	11.4	15.2	13.5	9.4
성남	2.6	2.8	2.8	4.2	5.4	5.0	6.3	4.2
안양	6.0	6.6	6.9	10.7	13.5	15.2	13.7	10.4
부천	5.3	6.0	6.3	10.0	11.8	11.9	12.1	9.1
안산	3.5	4.4	3.6	5.4	6.9	8.6	7.8	5.7
고양	3.9	5.2	6.2	9.0	11.6	13.2	14.9	9.1
과천	3.5	5.6	6.1	7.1	8.2	5.8	10.2	6.7
용인	5.5	6.2	5.0	8.7	9.1	7.3	7.6	7.0
화성	10.5	8.7	11.1	10.2	15.3	18.1	15.1	12.7

□ 불교부단체의 세출대비 민간이전경비비중을 살펴보면, 서울(4.3%), 경기(2.6%)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광역본청 평균(4.5%)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천(5.2%)은 평균 이상임

○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세출대비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반시 가운데 불교부단체의 민간이전경비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7.8%로 전국시(10.6%) 및 경기시(9.5%) 평균과 비교하여 약간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안양(10.4%), 화성(12.7%)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성남(4.2%), 안산(5.7%)은 상대적으로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낮은 수준임

□ 주민 1인당 민간이전경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전국 평균 100천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246천원으로 연평균 13.7%의 증가세를 보임

○ 분석기간 동안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연평균 6.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지역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보다 높은 15.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시지역의 경우 이 보다 높은 18.5%의 증가세를 보임

□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이전경비추이를 살펴보면, 인천(17.4%)은 광역본청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3.1%), 경기(4.3%)는 평균 이하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3-7〉 불교부단체 1인당 민간이전경비 추이

(단위: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100,196	118,563	136,592	155,542	190,050	214,742	246,187	13.7
광역본청	17,961	17,410	16,229	19,461	24,916	25,913	28,744	6.9
서울	44,760	39,231	32,354	41,393	53,370	52,444	55,515	3.1
인천	26,818	36,313	36,275	43,989	62,604	77,977	82,349	17.4
경기	15,547	11,539	48,337	19,341	17,632	19,095	20,905	4.3
시합계	74,045	97,443	106,249	129,557	157,018	178,389	201,826	15.4
교부(시)	89,940	119,104	130,359	154,283	183,551	200,636	228,245	14.2
경기시계	46,514	56,984	68,513	88,899	118,243	137,258	152,874	18.5
경기교부시	68,644	81,268	103,630	121,408	157,450	164,047	183,937	15.1
불교부(시)	30,612	38,322	41,507	63,556	91,021	111,492	123,101	22.0
수원	37,950	40,807	43,218	69,529	94,742	122,190	129,668	19.2
성남	14,383	17,785	21,768	37,377	52,234	63,471	77,579	27.2
안양	34,654	42,501	44,248	71,194	96,119	116,583	121,584	19.6
부천	30,334	38,439	42,423	67,102	83,154	93,960	114,159	20.8
안산	21,141	29,971	28,254	41,005	59,761	75,370	70,703	18.8
고양	24,999	33,510	45,080	61,256	85,315	110,121	130,315	26.6
과천	85,405	114,484	136,918	165,250	197,546	167,568	288,139	19.0
용인	54,206	71,024	63,657	96,533	108,087	93,107	105,318	10.0
화성	101,313	110,432	155,356	146,538	234,629	297,434	279,390	15.6

- 시지역의 경우에는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이전경비 증가율(22.0%)이 전국 시지역의 1인당 평균 민간이전경비 증가율(15.4%) 보다 높으며, 특히 성남(27.2%), 고양(26.6%) 등의 증가율이 높음
-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이전경비추이 분석결과 서울, 경기, 용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이전경비 증가율이 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이전경비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민간경상이전경비의 지출

- 민간경상이전 가운데 선심성·전시성 성격이 강한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 보조금(307-03), 민간행사보조(307-04)를 대상으로 민간경상이전경비의 실태를 분석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경상이전은 2002년 2조 1,822억원에서 2008년 6조 8,850 억원으로 연평균 1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2002년 4,328억원에서 2008년 7,156억원으로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시지역의 경우에는 2002년 7,187억원에서 2008년 2조 7,152억원으로 연평균 20.9%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교부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일반시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이 보다 높은 26.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불교부단체들의 민간경상이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광역본청 가운데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18.8%, 16.7% 증가하여 광역본청 평균(7.4%) 증가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은 5.3%로 평균 이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교부단체의 민간경상이전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25.1%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안양(26.3%), 고양(30.3%), 화성(38.1%)의 경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3-8〉 불교부단체 민간경상이전경비 추이

(단위: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2,182,270	2,595,944	3,120,629	3,963,282	4,893,434	5,863,408	6,885,006	17.8
광역본청	432,877	436,779	450,808	539,828	617,484	638,886	715,680	7.4
서울	207,556	218,441	210,824	248,095	308,594	262,286	298,221	5.3
인천	27,131	41,134	45,798	61,180	69,692	79,225	90,694	18.8
경기	59,129	82,978	100,766	127,891	127,484	144,713	174,424	16.7
시합계	718,789	896,609	1,103,947	1,505,131	1,895,702	2,262,778	2,715,239	20.9
교부(시)	615,536	765,363	937,625	1,276,076	1,525,560	1,859,864	2,220,441	20.1
경기시계	217,174	285,496	366,826	520,785	755,423	948,804	1,130,935	26.6
경기교부시	113,921	154,250	200,504	291,730	385,281	545,890	636,137	27.9
불교부(시)	103,253	131,246	166,322	229,055	370,142	402,914	494,798	25.1
수원	24,569	26,369	32,993	50,982	72,394	93,176	110,680	24.0
성남	11,120	12,298	16,892	21,410	33,197	40,731	51,178	24.4
안양	10,505	14,853	19,283	29,386	39,213	47,742	53,825	26.3
부천	19,108	24,382	28,509	30,219	38,210	47,790	61,031	18.0
안산	6,746	8,707	10,281	11,113	12,294	15,871	20,187	17.0
고양	15,400	22,362	30,090	41,101	60,351	78,659	98,274	30.3
과천	3,419	4,808	5,014	6,169	6,491	7,433	8,501	13.9
용인	12,386	17,467	23,260	38,675	64,525	56,467	61,743	25.8
화성	9,430	12,455	16,742	26,578	43,467	62,835	90,410	38.1

□ 불교부단체의 민간경상이전비 추이 분석결과 서울, 과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부 자치단체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세출대비 민간경상이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2002년 2.5%에서 2008년 2.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일반시지역의 경우에는 2002년 3.9%에서 2008년 7.8%로 증가하였으며, 경기시지역의 경우에도 2002년 3.3%에서 2008년 8.3%로 증가하였음

〈표 3-9〉 불교부단체 민간경상이전경비 세출대비 비중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전국	4.0	4.0	4.3	5.3	6.1	6.7	7.0	5.4
광역본청	2.5	2.2	2.0	2.3	2.6	2.4	2.3	2.3
서울	2.5	2.3	1.9	2.2	3.0	2.1	2.1	2.3
인천	1.6	2.1	2.0	2.5	2.5	2.5	2.4	2.2
경기	0.9	1.1	1.3	1.6	0.4	1.5	1.7	1.2
시합계	3.9	3.9	4.4	5.6	6.7	7.4	7.8	5.7
교부(시)	4.1	4.0	4.6	5.8	6.7	7.5	7.7	5.8
경기시계	3.3	3.6	3.9	5.2	7.0	7.9	8.3	5.6
경기교부시	3.7	3.9	4.4	5.6	7.5	8.8	8.8	6.1
불교부(시)	2.9	3.3	3.5	4.7	6.5	7.0	7.8	5.1
수원	4.1	4.0	3.6	5.4	8.2	10.8	10.8	6.7
성남	2.2	2.0	2.2	2.5	3.5	3.4	4.4	2.9
안양	3.1	3.8	4.9	7.1	8.8	10.0	9.7	6.8
부천	4.1	4.5	4.9	5.3	6.3	7.0	7.4	5.7
안산	1.8	2.0	1.9	2.2	2.0	2.6	3.1	2.2
고양	2.9	4.0	4.6	6.7	9.0	10.2	12.0	7.1
과천	2.0	3.4	3.3	4.3	4.5	4.2	4.3	3.7
용인	2.4	2.7	2.8	5.0	7.1	5.5	5.4	4.4
화성	4.3	4.1	4.4	6.3	9.1	10.3	10.9	7.1

□ 불교부단체의 세출대비 민간경상이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1.2%)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광역본청 평균(2.3%)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2.3%)과 경기(48.9%)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일반시 가운데 불교부단체의 민간경상이전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5.1%로 전국시(5.7%) 및 경기시(5.6%) 평균과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세출규모를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수원(6.7%), 안양(6.8%), 고양(7.1%), 화성(7.1%) 등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주민 1인당 민간경상이전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전국 평균 45천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39천원으로 연평균 17.4%의 증가세를 보임

- 분석기간 동안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연평균 7.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지역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보다 높은 19.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시지역의 경우 이 보다 높은 23.7%의 증가세를 보임

〈표 3-10〉 불교부단체 1인당 민간경상이전경비 추이

(단위: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45,247	53,650	64,232	81,244	99,883	119,008	138,978	17.4
광역본청	8,975	9,027	9,279	11,066	12,604	12,967	14,446	7.0
서울	20,334	21,470	20,724	24,401	30,310	25,733	29,235	5.3
인천	10,524	16,004	17,759	23,526	26,555	29,733	33,681	18.1
경기	5,956	8,130	9,631	11,956	11,689	13,030	15,446	14.6
시합계	35,438	42,886	52,102	70,155	86,777	102,482	121,549	19.3
교부(시)	41,454	50,021	60,732	81,762	97,909	112,247	132,755	18.1
경기시계	23,256	28,796	36,067	50,049	71,174	87,770	102,882	23.7
경기교부시	29,176	35,801	45,348	63,999	88,581	103,002	118,248	22.1
불교부(시)	19,001	23,412	28,929	39,174	59,088	73,120	88,155	24.5
수원	24,094	25,528	31,913	48,759	67,727	87,268	103,689	23.2
성남	11,818	12,783	17,287	21,779	34,407	42,697	54,303	24.3
안양	17,651	24,571	31,049	46,991	62,813	76,485	86,775	25.5
부천	23,402	28,880	33,317	35,329	44,429	55,310	70,338	17.0
안산	10,727	13,362	15,419	16,366	17,593	22,511	28,502	15.0
고양	18,406	25,850	33,962	45,462	66,305	85,052	104,677	28.2
과천	48,505	68,369	73,376	101,204	107,321	119,327	122,357	14.1
용인	23,564	30,364	36,318	55,755	84,174	70,558	75,595	18.1
화성	41,555	52,725	61,651	89,630	140,139	168,924	201,200	25.3

-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경상이전 추이를 살펴보면, 인천(18.1%), 경기(14.6%)는 광역본청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5.3%)은 평균 이하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시지역의 경우에는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경상이전 증가율(24.5%)이 전국 시지역의 1인당 평균 민간경상이전 증가율(19.3%) 보다 높으며, 특히 안양(25.5%),

고양(28.2%), 화성(25.3%) 등의 증가율이 높음

-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경상이전 분석결과 서울, 과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경상이전 증가율이 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경상이전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민간자본이전 지출

-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이전은 2002년 2조 6,501억원에서 2008년 5조 3,111억원으로 연평균 10.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1〉 불교부단체 민간자본이전경비 추이

(단위: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2,650,162	3,140,948	3,515,527	3,624,402	4,417,441	4,716,710	5,311,167	10.4
광역본청	433,389	405,643	337,662	409,510	603,209	637,836	708,306	7.3
서울	249,325	180,699	118,317	172,766	234,775	272,262	268,080	1.0
인천	42,006	52,198	47,749	53,212	94,606	128,550	131,047	17.6
경기	95,213	34,802	404,984	79,003	64,815	67,361	61,640	-6.0
시합계	783,049	1,140,598	1,147,272	1,274,408	1,534,466	1,675,999	1,793,282	12.6
교부(시)	719,955	1,057,012	1,074,957	1,131,846	1,334,427	1,464,559	1,597,135	12.1
경기시계	217,201	279,476	330,002	404,252	499,586	534,970	549,531	14.2
경기교부시	154,107	195,890	257,687	261,690	299,547	323,530	353,384	12.6
불교부(시)	63,094	83,586	72,315	142,562	200,039	211,440	196,147	17.6
수원	14,129	15,782	11,687	21,717	28,876	37,287	27,731	10.1
성남	2,414	4,812	4,379	15,334	17,200	19,818	21,936	37.1
안양	10,119	10,839	8,197	15,135	20,792	25,029	21,591	11.4
부천	5,660	8,070	7,792	27,177	33,304	33,395	38,022	31.3
안산	6,549	10,823	8,558	16,730	29,468	37,268	29,889	24.2
고양	5,516	6,627	9,851	14,279	17,303	23,185	24,070	23.4
과천	2,601	3,243	4,342	3,904	5,457	3,005	11,518	23.7
용인	16,106	23,390	17,509	28,286	18,331	18,046	24,277	6.0
화성	13,561	13,632	25,447	16,875	29,308	47,802	35,135	14.6

-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2002년 4,333억원에서 2008년 7,083억원으로 연평균 7.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시지역의 경우에는 2002년 7,830억원에서 2008년 1조 7,932억원으로 연평균 12.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교부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일반시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14.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불교부단체들의 민간자본이전 증가세를 살펴보면, 광역본청 가운데 인천이 17.6%로 광역본청 평균(7.3%) 증가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1.0%)은 그 변화가 없으며, 경기(-6.0%)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교부단체의 민간자본이전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17.6%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성남(37.1%), 부천(31.3%), 안산(24.2%)의 경우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불교부단체의 민간자본이전 추이 분석결과 서울, 경기, 용인, 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세출대비 민간자본이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5%내외의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2%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일반시지역의 경우에는 2002년 4.2%에서 2008년 5.1%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경주시지역의 경우에는 전국시 평균보다 낮은 4%대를 유지하고 있음
- 불교부단체의 세출대비 민간자본이전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2.9%)은 광역본청 평균(2.1%)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2.0%)과 경기(1.4%)는 평균 이하 수준임
- 일반시 가운데 불교부단체의 민간자본이전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전국시(4.9%) 및 경주시(3.9%)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화성(5.7%)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출대비 민간자본이전 비중이 높은 수준임

〈표 3-12〉 불교부단체 민간자본이전경비 세출대비 비중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전국	4.8	4.8	4.9	4.9	5.5	5.4	5.4	5.1
광역분청	2.5	2.0	1.5	1.8	2.5	2.4	2.3	2.1
서울	3.1	1.9	1.1	1.5	2.3	2.2	1.9	2.0
인천	2.4	2.7	2.1	2.2	3.4	4.1	3.5	2.9
경기	1.4	0.5	5.3	1.0	0.2	0.7	0.6	1.4
시합계	4.2	4.9	4.6	4.8	5.4	5.5	5.1	4.9
교부(시)	4.8	5.5	5.3	5.2	5.9	5.9	5.6	5.5
경기시계	3.3	3.5	3.5	4.0	4.6	4.5	4.0	3.9
경기교부시	5.0	5.0	5.6	5.0	5.8	5.2	4.9	5.2
불교부(시)	1.8	2.1	1.5	2.9	3.5	3.7	3.1	2.7
수원	2.4	2.4	1.3	2.3	3.3	4.3	2.7	2.7
성남	0.5	0.8	0.6	1.8	1.8	1.6	1.9	1.3
안양	3.0	2.8	2.1	3.6	4.7	5.2	3.9	3.6
부천	1.2	1.5	1.4	4.7	5.5	4.9	4.6	3.4
안산	1.7	2.4	1.6	3.2	4.9	6.1	4.6	3.5
고양	1.0	1.2	1.5	2.3	2.6	3.0	2.9	2.1
과천	1.5	2.3	2.8	2.7	3.7	1.7	5.9	3.0
용인	3.1	3.6	2.1	3.7	2.0	1.8	2.1	2.6
화성	6.2	4.5	6.7	4.0	6.2	7.8	4.2	5.7

□ 주민 1인당 민간자본이전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전국 평균 55천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07천원으로 연평균 10.0%의 증가세를 보임

- 분석기간 동안 광역분청의 경우에는 연평균 6.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지역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보다 약간 높은 11.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시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11.6%의 증가세를 보임

□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자본이전 추이를 살펴보면, 인천(16.9%)은 광역분청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7.7%)는 감소추세에 있음

- 시지역의 경우에는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자본이전 증가율(17.0%)이 경기시지역의 1인당 평균 민간자본이전 증가율(11.6%) 보다 높으며, 특히 성남(37.0%), 부천(30.1%) 등의 증가율이 높음

〈표 3-13〉 불교부단체 1인당 민간자본이전경비 추이

(단위: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54,948	64,913	72,360	74,298	90,167	95,734	107,209	10.0
광역본청	8,986	8,383	6,950	8,395	12,312	12,946	14,298	6.9
서울	24,426	17,761	11,630	16,992	23,060	26,711	26,280	1.1
인천	16,294	20,309	18,516	20,462	36,049	48,244	48,668	16.9
경기	9,591	3,410	38,707	7,385	5,943	6,065	5,459	-7.7
시합계	38,607	54,556	54,147	59,401	70,241	75,907	80,277	11.0
교부(시)	48,486	69,083	69,627	72,521	85,642	88,389	95,489	10.2
경기시계	23,258	28,189	32,446	38,850	47,070	49,488	49,991	11.6
경기교부시	39,468	45,466	58,281	57,409	68,869	61,046	65,689	7.5
불교부(시)	11,611	14,910	12,578	24,382	31,933	38,372	34,946	17.0
수원	13,856	15,279	11,305	20,770	27,015	34,923	25,979	9.4
성남	2,565	5,002	4,481	15,598	17,827	20,774	23,276	37.0
안양	17,003	17,930	13,199	24,202	33,306	40,098	34,809	10.8
부천	6,932	9,559	9,106	31,773	38,725	38,650	43,820	30.1
안산	10,414	16,609	12,835	24,639	42,168	52,859	42,201	22.1
고양	6,593	7,661	11,119	15,794	19,010	25,069	25,638	21.4
과천	36,900	46,115	63,542	64,046	90,225	48,241	165,781	23.9
용인	30,642	40,660	27,339	40,778	23,913	22,549	29,723	-0.4
화성	59,759	57,707	93,706	56,908	94,490	128,510	78,190	3.9

□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자본이전 추이 분석결과 서울, 경기, 용인, 화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자본이전 증가율이 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자본이전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3절 불교부단체의 행사·축제성 예산 운용

※ 행사·축제성 경비는 행사운영비(201-02),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를 의미함

□ 전국적으로 행사·축제성 경비는 2002년 3,159억원에서 2008년 8,888억원으로 증

가하여 연평균 15.9%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불교부단체의 행사·축제성경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이 2002년 82억원에서 2008년 295억원으로 연평균 20.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인천과 경기의 경우에도 동기간 동안 각각 연평균 15.8%, 11.9%의 증가세를 보여 광역본청 평균 증가율 7.0%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4〉 불교부단체 행사·축제성경비 추이

(단위: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315,896	360,214	477,402	598,932	634,781	731,720	888,860	15.9
광역본청	62,824	34,502	47,336	80,645	63,936	85,006	101,023	7.0
서울	8,241	2,381	3,813	13,923	9,851	14,992	29,501	20.0
인천	8,622	7,409	8,426	9,537	12,057	16,021	24,033	15.8
경기	5,467	8,462	12,664	23,889	17,607	13,518	12,000	11.9
시합계	129,657	162,550	213,784	258,873	285,037	333,563	397,064	17.3
교부(시)	106,218	135,979	175,939	206,401	225,562	272,177	325,583	17.4
경기시계	43,350	56,003	75,623	98,089	104,017	117,784	140,022	18.2
경기교부시	19,911	29,432	37,778	45,617	44,542	56,398	68,541	19.3
불교부(시)	23,439	26,571	37,845	52,472	59,475	61,386	71,481	17.3
수원	11,715	8,528	9,455	11,450	12,638	14,088	14,009	2.6
성남	2,219	3,137	8,194	13,301	13,445	15,819	11,818	27.0
안양	2,141	2,565	4,838	6,248	5,716	3,943	3,868	8.8
부천	2,121	2,592	2,831	4,295	4,905	5,073	9,109	23.1
안산	2,163	3,386	5,029	6,518	6,204	6,619	6,529	17.1
고양	1,220	2,814	3,314	3,739	5,885	4,726	8,883	32.8
과천	1,232	1,684	2,047	3,321	3,897	4,297	5,344	23.3
용인	628	1,865	2,137	3,600	3,380	6,613	7,027	41.2
화성	1,013	1,644	2,005	3,294	3,405	5,281	14,003	45.5

□ 시지역의 행사·축제성경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1,296억원에서 2008년 3,970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7.3%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불교부 일반시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17.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불교부단체 가운데 성남(27.0%), 부천(23.1%), 고양(32.8%), 과천(23.3%), 용인(41.2%), 화성(45.5%) 등이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세출대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약 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본청(0.3%)에 비해 시지역(0.9%)의 세출대비 비중이 높음

□ 불교부단체의 세출대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0.1%), 경기(0.1%)의 경우 광역본청 평균(0.3%)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천(0.5%)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15〉 불교부단체 행사·축제성경비 세출대비 비중 추이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전국	0.6	0.6	0.7	0.8	0.8	0.8	0.9	0.7
광역본청	0.4	0.2	0.2	0.4	0.3	0.3	0.3	0.3
서울	0.1	0.0	0.0	0.1	0.1	0.1	0.2	0.1
인천	0.5	0.4	0.4	0.4	0.4	0.5	0.6	0.5
경기	0.1	0.1	0.2	0.3	0.1	0.1	0.1	0.1
시합계	0.7	0.7	0.9	1.0	1.0	1.1	1.1	0.9
교부(시)	0.7	0.7	0.9	0.9	1.0	1.1	1.1	0.9
경기시계	0.7	0.7	0.8	1.0	1.0	1.0	1.0	0.9
경기교부시	0.6	0.7	0.8	0.9	0.9	0.9	0.9	0.8
불교부(시)	0.7	0.7	0.8	1.1	1.0	1.1	1.1	0.9
수원	2.0	1.3	1.0	1.2	1.4	1.6	1.4	1.4
성남	0.4	0.5	1.1	1.5	1.4	1.3	1.0	1.0
안양	0.6	0.7	1.2	1.5	1.3	0.8	0.7	1.0
부천	0.5	0.5	0.5	0.7	0.8	0.7	1.1	0.7
안산	0.6	0.8	1.0	1.3	1.0	1.1	1.0	1.0
고양	0.2	0.5	0.5	0.6	0.9	0.6	1.1	0.6
과천	0.7	1.2	1.3	2.3	2.7	2.4	2.7	1.9
용인	0.1	0.3	0.3	0.5	0.4	0.6	0.6	0.4
화성	0.5	0.5	0.5	0.8	0.7	0.9	1.7	0.8

- 일반시 가운데 불교부단체의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0.9%로 전국시(0.9%) 및 경기시(0.9%) 평균과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수원(1.4%), 과천(1.9%)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출대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주민 1인당 행사·축제성경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 전국 평균 7천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8천원으로 연평균 15.5%의 증가세를 보임
 - 분석기간 동안 광역본청의 경우에는 연평균 6.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지역의 경우에는 전국평균 보다 높은 15.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소재 시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15.5%의 증가세를 보임

〈표 3-16〉 불교부단체 1인당 행사·축제성경비 추이

(단위: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전국	6,550	7,444	9,826	12,278	12,957	14,852	17,942	15.5
광역본청	1,303	713	974	1,653	1,305	1,725	2,039	6.6
서울	807	234	375	1,369	968	1,471	2,892	20.0
인천	3,344	2,883	3,267	3,667	4,594	6,013	8,925	15.1
경기	551	829	1,210	2,233	1,614	1,217	1,063	9.8
시합계	6,392	7,775	10,090	12,066	13,048	15,107	17,775	15.7
교부(시)	7,153	8,887	11,396	13,225	14,476	16,426	19,466	15.4
경기시계	4,642	5,649	7,435	9,427	9,800	10,896	12,738	15.5
경기교부시	5,099	6,831	8,544	10,007	10,241	10,642	12,741	14.0
불교부(시)	4,313	4,740	6,583	8,974	9,494	11,140	12,735	16.7
수원	11,489	8,256	9,146	10,951	11,823	13,195	13,124	1.9
성남	2,358	3,261	8,385	13,530	13,935	16,582	12,540	27.0
안양	3,597	4,243	7,790	9,991	9,156	6,317	6,236	8.2
부천	2,598	3,070	3,308	5,021	5,703	5,871	10,498	22.1
안산	3,440	5,196	7,542	9,599	8,878	9,388	9,218	15.1
고양	1,458	3,253	3,740	4,136	6,466	5,110	9,462	30.6
과천	17,478	23,946	29,956	54,482	64,432	68,983	76,918	23.6
용인	1,195	3,242	3,337	5,190	4,409	8,263	8,603	32.6
화성	4,464	6,959	7,383	11,108	10,978	14,197	31,163	32.0

- 불교부단체의 1인당 행사·축제성경비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20.0%), 인천(15.1%), 경기(9.8%)는 광역본청 평균 증가율(6.6%)보다 높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시지역의 경우에는 불교부단체의 1인당 행사·축제성경비 증가율(16.7%)이 전국 시지역의 1인당 평균 행사·축제성경비 증가율(15.7%) 보다 높음
 - 특히 성남(27.0%), 고양(30.6%), 용인(32.6%), 화성(32.0%)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불교부단체의 1인당 행사·축제성경비 추이 분석결과 경기본청, 수원, 안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부단체의 1인당 행사·축제성경비 증가율이 교부단체의 1인당 행사·축제성경비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4절 불교부단체의 대규모 건물 건립

- 2000년 이후 용인시청 등 37개 청사가 신축 완료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청·충남도청·신안군청 등 11개 자치단체 청사의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공사비를 포함한 평균 총사업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는 2,783억원, 기초자치단체(행정구 포함)는 60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용산구청의 총사업비는 1,522억원, 용인시 행정구인 수지구청의 경우는 866억원으로 나타남.

- 이러한 자치단체의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청사 신축을 추진하여 과중한 채무부담에 시달리고 있음

○ 과대 청사를 건립하면서 전시성의 강조로 에너지를 과소비²⁾하여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역행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자치단체의 청사 신·증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자치단체의 회비 등으로 조성한 청사정비기금(2009년 현재 조성원금 6,148억원)을 통해 자치단체의 청사정비 지원 및 지원금 환수 등의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사정비기금은 자치단체 청사의 신축·매입 및 증축을 위한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청사유형별로 설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음.

〈표 3-17〉 신축중 자치단체 청사 현황(2010. 1 현재)

자치단체	착공일 (준공예정)	사업비(억원)		연면적 (㎡)	면적당 공사비 (천원/㎡)	비 고
		공사비	총사업비			
서울시청	'06.5('11.10)	1,565	2,288	90,788	1,724	도서관 등 설계변경 예정
충남도청	'07.7('12.12)	2,327	3,277	103,273	2,253	의회, 민원동, 대강당
용산구청	'08.4('10.3)	1,248	1,522	59,177	2,109	의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광주 서구청	'09.3('11.3)	392	497	22,967	1,707	의회, 보건소
대전 동구청	'08.10('11.4)	547	660	35,748	1,532	의회, 도서관, 보건소
당진군청	'09.4('11.4)	570	600	34,979	1,630	의회
부안군청	'07.6('10.5)	321	334	19,784	1,623	의회
임실군청	'08.3('10.3)	230	256	13,094	1,760	의회
신안군청	'06.5('10.9)	163	260	11,379	1,432	의회
용인시 수지구청	'09.8('11.11)	776	866	43,498	1,784	노인복지, 시립보육, 청소년, 장애인복지
안산시 상록구청	'09.3('11.1)	331	485	20,103	1,648	보육시설, 문화예술
평균	광역	1,946	2,783	97,031	1,989	
	기초	509	609	28,970	1,692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 2005~2008년 건설된 자치단체 신축청사 15곳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1,118 t 으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청사의 2.2배이고,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1,234kgoe로서 1.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조선일보 2010. 1.12)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사 건립실태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4개로서 평균 총사업비가 2,171억원, 평균 면적이 89,803㎡이고 기초자치단체는 21개(행정구 포함)로서 총사업비 866억원, 평균 면적 35,437㎡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8〉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신청사 건립현황

구분	단체명	평균 총사업비 (억원)	평균 면적 (㎡)
광역단체(4)	서울, 충남, 전북, 전남	2,171	89,803
기초단체(21)	-	866	35,437
- 시청(7)	용인, 천안, 사천, 포항, 원주, 이천, 성남	1,298	47,313
- 군청(5)	웅진, 당진, 부안, 임실, 신안	358	18,844
- 구청(9)	관악, 마포, 금천, 용산, 부산 남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용인 수지구, 안산 상록구	812	35,418

주: 2010. 1 현재 기준 - 건립완료 12단체, 건립중 13단체

- 최근 신축된 불교부단체의 신청사로는 성남시(연면적 7만 2,746㎡, 사업비 3,222억원), 용인시(연면적 3만 7,942㎡, 사업비 1,974억원)를 들 수 있음
 - 특히, 호화청사, 에너지 과다소비 등의 문제가 야기된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우 청사정비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으로 건립하고 청사정비기금의 지원한도액 기준의 규모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위화감을 주거나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음.
 - 지역주민의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문화시설이 포함된 복합청사의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에너지효율화 개선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제5절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 자체노력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제도

- 자치단체의 세입증대와 세출절감 노력을 촉진·유도하여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보통교부세 산정시 자체노력 반영제도를 두고 있음
 - 최근 들어 자치단체의 예산지출상의 자체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요 인센티브 항목과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표 3-19〉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항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3종	13종	13종	13종	13종	10종	11종	14종	16종
<수요>	6	6	6	6	6	4	4	8	10
공무원정원운영	○	○	○	○	○	×	×	×	×
비정규직공무원운영	○	○	○	○	○	×	×	×	×
경상경비절감운영	○	○	○*	○	○**	○	○**	×	×
상수도요금현실화	○	○	○	○	○**	○	○**	×	×
읍면동통합운영	○	○	○	○	○	○*	○**	○*	○
지방청사(면적)관리운영	○	○	○	○	○*	○	○	○**	○
사회문화복지분야예산운영							○	○	○
건전예산운영								○	○*
지방조직운영								○	○
지역경제활성화								○	○**
생활폐기물절감								○	○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								○	○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
<수입>	7	7	7	7	7	6	6	6	6
지방세징수율	○	○	○	○	○**	○**	○	○**	○**
주민세개인균등할인상	○	○	○*	○	○	○	○	○	○
과세표준현실화	○	○	○*	○	○	×	×	×	×
탄력세율적용	○	○	○	○*	○	○	○	○	○
수수료현실화	○	○	×	×	×	×	×	×	×
경상세외수입확충			○	○	○**	○**	○*	○**	○**
지방세체납액 축소	○	○	○	○	○**	○	○	○**	○**
지방세원발굴	○	○	○	○	○	○	○	○	○

주: * 산정기준 변경, ** 반영비율 확대

- 불교부단체의 경우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상의 자체노력 반영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유인이 없음
 - 따라서 불교부단체가 교부단체에 비해 불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 왔다면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되는 자체노력 반영 항목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임
-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항목 가운데 분석기간 동안 보통교부세 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된 항목들을 대상으로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실태를 분석함
 - 수요 인센티브항목 : 경상경비절감운영, 지방청사관리운영
 - 수입 인센티브항목 : 지방세징수율, 주민세개인균등화

2. 경상경비절감운영

- 경상경비절감 인센티브 항목은 자치단체의 경상경비(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 집행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계상시의 절감노력과 예산집행 과정상의 절감노력을 동시에 반영함
 - 자치단체의 경상경비절감은 당해자치단체 경상경비집행절감노력과 동종자치단체의 평균적인 경상경비절감노력을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노력이 상을 할 경우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평균이하의 노력을 할 경우 페널티로 작용
 - 분석기간동안 시지역은 대체적으로 경상경비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자치단체가 더 많으며, 특히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는 경상경비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인센티브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불교부 市의 경우 자치단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분석기간 동안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교부단체에 비해 경상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덜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됨

〈표 3-20〉 자치단체별 경상경비절감 노력 규모

(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전국	179,210	102,713	9,170	501,437	-89,498	-441,200	100,193	362,025
광역분청	180,187	95,697	-31,070	429,593	-186,944	-425,702	81,419	143,179
서울	180,177	124,257	36,183	366,637	-191,480	-365,724	26,539	176,588
인천	5,950	23,113	5,873	-35,160	3,580	-58,338	2,136	-52,846
경기	-25,843	-36,143	-61,750	-66,290	-13,080	-48,576	31,377	-220,306
시합계	-620	1,467	22,527	47,963	79,608	-20,754	8,477	138,668
교부(시)	6,113	5,647	22,760	33,183	121,606	13,698	9,311	212,319
경기시계	-19,400	-29,697	-5,413	-30,667	-37,422	-27,464	8,886	-141,177
경기교부시	-12,667	-25,517	-5,180	-45,447	4,576	6,988	9,720	-67,526
불교부(시)	-6,733	-4,180	-233	14,780	-41,998	-34,452	-834	-73,651
수원	3,247	-9,263	-1,687	-5,483	3,136	-3,786	2,081	-11,755
성남	-2,977	-8,747	11,777	43,743	-31,482	6,490	13,707	32,512
안양	1,310	6,690	4,923	-1,210	1,106	1,834	7,763	22,416
부천	-1,463	7,260	13,850	2,970	10,390	11,000	12,576	56,582
안산	-3,377	2,887	-9,127	-4,383	-11,862	596	7,719	-17,547
고양	290	330	-9,143	-8,240	-6,444	-9,592	203	-32,596
과천	-2,553	307	-4,103	1,947	-1,522	1,338	6,769	2,181
용인	-1,210	-3,643	-6,723	-14,563	486	-19,988	-24,719	-70,361
화성	263	-10,440	7,103	-8,937	-5,806	-11,344	-14,357	-43,517

3. 지방청사관리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청사 보유면적이 공무원수와 의원수에 기초한 적정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받으며, 초과하는 경우 페널티를 받음
 - 전국적으로는 2003년과 2008년 기준으로 자치단체들은 공무원수와 의원수에 기초한 적정면적의 지방청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특히 보통교부세 교부 시의 경우 적정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지방청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불교부 시의 경우 안산을 제외한 모든 불교부 시들이 적정면적 대비 17~51%를 초과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페널티를 받고 있음

〈표 3-21〉 자치단체별 청사규모

(단위: m²)

	2003			2008			비고
	보유면적(A)	적정면적(B)	A/B	보유면적(A)	적정면적(B)	A/B	
전국	6,093,344	5,936,946	1.03	6,187,463	6,187,461	1.00	
광역본청	2,534,117	2,472,065	1.03	2,420,839	2,681,733	0.90	
서울	1,028,528	987,822	1.04	843,772	1,086,206	0.78	
인천	262,867	198,979	1.32	259,287	225,351	1.15	
경기	75,826	59,435	1.28	75,823	68,730	1.10	
시합계	2,304,343	2,171,525	1.06	2,476,295	2,262,756	1.09	
교부(시)	1,855,185	1,813,608	1.02	1,980,840	1,870,939	1.06	
경기시계	889,927	738,464	1.21	1,033,768	850,489	1.22	
경기교부시	440,769	380,547	1.16	538,313	458,672	1.17	
불교부(시)	449,158	357,917	1.25	495,455	391,817	1.26	
수원	61,496	63,646	0.97	82,627	67,650	1.22	
성남	66,858	60,922	1.10	71,734	61,404	1.17	
안양	79,651	42,310	1.88	75,121	49,844	1.51	
부천	87,667	54,138	1.62	91,764	62,405	1.47	
안산	29,011	41,769	0.69	34,778	47,912	0.73	
고양	60,830	50,889	1.20	77,145	61,819	1.25	
과천	14,453	11,729	1.23	14,949	8,641	1.73	
용인	49,192	32,514	1.51	90,558	60,335	1.50	
화성	44,901	24,904	1.80	48,543	34,212	1.42	

4. 지방세징수율

- 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 증대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이 동종자치단체중 지방세징수율 상위 1/2단체의 평균징수율보다 높으면 초과징수금액의 일정율을 인센티브로 받으며, 낮으면 페널티를 받음
- 분석기간동안 불교부 市の 평균적인 지방세 징수율은 93.91%인 반면 전국시 평균은 이보다 높은 95.58%이며 교부 市の 경우에는 95.79%를 보이고 있어 불교부 市の 지방세 징수 증대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3-22〉 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율 추이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전국	95.87	95.83	96.41	96.46	96.72	96.50	96.30
광역본청	97.13	96.70	96.87	96.65	96.94	96.60	96.82
서울	96.99	96.11	96.31	96.27	96.41	96.24	96.39
인천	94.77	94.35	95.35	95.60	96.19	96.23	95.42
경기	98.29	98.05	97.81	98.21	97.91	97.45	97.95
시합계	94.57	94.68	95.70	96.00	96.30	96.24	95.58
교부(시)	94.65	94.79	96.08	96.28	96.50	96.42	95.79
경기시계	93.65	93.44	92.62	93.47	94.25	93.95	93.56
경기교부시	93.53	93.30	92.68	93.25	94.08	93.63	93.41
불교부(시)	93.94	93.77	92.49	93.92	94.66	94.71	93.91
수원	96.14	95.15	95.05	96.04	96.05	95.03	95.58
성남	93.67	94.52	92.90	94.11	94.28	95.73	94.20
안양	94.28	93.00	92.00	94.23	94.19	94.58	93.71
부천	92.68	93.47	89.79	91.26	93.11	92.90	92.20
안산	92.49	91.35	89.63	91.86	91.31	92.35	91.50
고양	92.49	92.57	91.52	92.24	94.31	92.51	92.61
과천	95.87	95.77	94.91	96.19	97.04	97.00	96.13
용인	93.88	94.32	94.09	94.33	94.63	95.08	94.39
화성	94.00	95.28	94.67	95.01	95.48	95.43	94.98

5. 주민세개인균등할

-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센티브는 기준세액과 비교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더 높은 세액을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게되며, 기준세액보다 낮은 세액을 적용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됨
- 기준세액이 동종자치단체 평균개인균등할 적용세액이던 2003년에 교부단체는 평균세액 이상을 적용한 반면 불교부단체는 평균세액 이하를 적용하여 페널티를 받음
- 2008년에는 기준세액이 상위 1/3인 자치단체의 평균개인균등할 적용세액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교부단체의 경우에도 많은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불교부단체의 기준세액대비 적용세액비율(0.65)이 교부단체(0.79)에 비해 더 낮아 불교부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액을 적용하고 있음

〈표 3-23〉 불교부단체 추이

(단위: 원)

	2003			2008			비고
	기준세액	적용세액	비율	기준세액	적용세액	비율	
시합계	4,126	4,180	1.01	6,128	4,764	0.78	
교부(시)		4,216	1.02		4,855	0.79	
경기시계		4,185	1.01		4,556	0.74	
경기교부시		4,316	1.05		4,789	0.78	
불교부(시)		3,875	0.94		4,000	0.65	
수원		4,000	0.97		4,000	0.65	
성남		4,000	0.97		4,000	0.65	
안양		4,000	0.97		4,000	0.65	
부천		4,000	0.97		4,000	0.65	
안산		4,000	0.97		4,000	0.65	
고양		4,000	0.97		4,000	0.65	
과천		3,000	0.73		3,000	0.49	
용인		4,000	0.97		4,000	0.65	
화성	5,000	1.21	5,000	0.82			

6. 지방채무의 증가와 관리

- 2008년까지 17~19조원을 유지하던 지방채무잔액이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급증하여 2009년말기준 25조 5,531억원규모임
 - 특히 광역본청의 지방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9년 기준 17조 7,100억원으로 전체 지방채무의 69.3%를 차지함
 - 분석기간동안 교부 市의 경우 지방채무가 연평균 4.7%증가하였으나 불교부 市의 경우 오히려 지방채무는 연평균 -6.7%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용인, 화성 등 일부 불교부단체의 경우 지방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채무관리가 요구됨

〈표 3-24〉 자치단체별 지방채무 추이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감율
전국	174,351	182,077	192,255	255,531	10.0
광역분청	111,276	122,166	131,342	177,100	12.3
서울	9,159	13,621	17,045	30,963	35.6
인천	12,366	13,758	15,432	23,343	17.2
경기	10,772	12,880	14,498	16,858	11.8
시합계	49,728	46,656	47,844	59,731	4.7
교부(시)	37,580	38,934	40,552	50,526	7.7
경기시계	20,412	17,097	16,795	21,148	0.9
경기교부시	8,264	9,375	9,503	11,943	9.6
불교부(시)	12,148	7,722	7,292	9,205	-6.7
수원	3,052	3,003	2,625	2,705	-3.0
성남	4,348	301	193	140	-57.6
안양	583	489	452	710	5.1
부천	862	1,045	1,138	1,314	11.1
안산	511	426	340	260	-15.5
고양	1,664	2,150	2,135	2,670	12.5
과천	6	5	4	3	-15.9
용인	541	540	443	1,078	18.8
화성	581	808	1,100	1,639	29.6

제 4 장

불교부단체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 전시·선심성 예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제1절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전시·선심성 예산 지원

제2절 빈번한 축제개최와 축제예산의 과다

제3절 상대적으로 낮은 세입 자구노력

제4절 높은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제5절 과다한 업무추진비 지출



제4장

불교부단체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 전시·선심성 예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제1절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전시·선심성 예산 지원

- 민간이전비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불교부단체들의 민간경상이전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경상이전경비 중에서도 민간경상보조(307-02)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분석기간(2002~2008) 동안 경기도 전체 시지역의 민간경상보조 증가율은 33.7%이며, 경기도 시지역 가운데 교부단체의 경우에는 이 보다 낮은 32.6%이나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35.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민간경상이전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307-03)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상한제의 실시로 인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분석기간 동안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경기도 전체 市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8.0%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부단체의 경우에는 -4.9%, 불교부단체는 -10.2%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불교부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의 높은 감소세는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경상이전경비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불교부단체들이 상한제에 의해 규제를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대신하여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민간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을 증대시켜 왔음을 알 수 있음
 - 민간경상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경기도 전체 시의 경우 2002년 60.4%에서 2008년 88.7%로 28.3%p 증가하였고 교부단체의 경우에는 69.6%(2002년)에서 89.7%(2008년)로 20.1%p 증가함
 - 반면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2002년 50.3%에서 2008년 87.4%로 증가하여 교부단체의 20.1%p 보다 높은 37.1%p의 증가세를 보임

〈표 4-1〉 민간경상이전 항목별 추이

(단위: 백만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시 합 계	민간경상 이전	718,789 (100.0)	896,609 (100.0)	1,103,947 (100.0)	1,505,131 (100.0)	1,895,702 (100.0)	2,262,778 (100.0)	2,715,239 (100.0)	20.9
	307-02	456,585 (63.5)	584,214 (65.2)	769,406 (69.7)	1,111,366 (73.8)	1,575,359 (83.1)	1,928,063 (85.2)	2,350,567 (86.6)	26.4
	307-03	170,775 (23.8)	194,410 (21.7)	176,750 (16.0)	198,907 (13.2)	103,703 (5.5)	88,349 (3.9)	84,886 (3.1)	-9.5
	307-04	91,429 (12.7)	117,985 (13.2)	157,791 (14.3)	194,858 (12.9)	216,640 (11.4)	246,366 (10.9)	279,786 (10.3)	17.3
경 기 시 계	민간경상 이전	217,174 (100.0)	285,496 (100.0)	366,826 (100.0)	520,785 (100.0)	755,423 (100.0)	948,804 (100.0)	1,130,935 (100.0)	26.6
	307-02	131,242 (60.4)	177,031 (62.0)	257,124 (70.1)	386,819 (74.3)	638,774 (84.6)	830,000 (87.5)	1,002,599 (88.7)	33.7
	307-03	51,663 (23.8)	63,275 (22.2)	49,263 (13.4)	56,028 (10.8)	32,395 (4.3)	30,455 (3.2)	28,860 (2.6)	-8.0
	307-04	34,269 (15.8)	45,190 (15.8)	60,439 (16.5)	77,938 (15.0)	84,254 (11.2)	88,349 (9.3)	99,476 (8.8)	16.4
경 기 교 부 시 계	민간경상 이전	113,921 (100.0)	154,250 (100.0)	200,504 (100.0)	291,730 (100.0)	385,281 (100.0)	545,890 (100.0)	636,137 (100.0)	27.9
	307-02	79,301 (69.6)	106,291 (68.9)	157,721 (78.7)	241,868 (82.9)	336,714 (87.4)	487,526 (89.3)	570,354 (89.7)	32.6
	307-03	19,395 (17.0)	24,149 (15.7)	11,712 (5.8)	12,834 (4.4)	12,509 (3.2)	14,602 (2.7)	13,693 (2.2)	-4.9
	307-04	15,225 (13.4)	23,810 (15.4)	31,071 (15.5)	37,028 (12.7)	36,058 (9.4)	43,762 (8.0)	52,090 (8.2)	19.2
불 교 부 단 체	민간경상 이전	103,253 (100.0)	131,246 (100.0)	166,322 (100.0)	229,055 (100.0)	370,142 (100.0)	402,914 (100.0)	494,798 (100.0)	25.1
	307-02	51,941 (50.3)	70,740 (53.9)	99,403 (59.8)	144,951 (63.3)	302,060 (81.6)	342,474 (85.0)	432,245 (87.4)	35.4
	307-03	32,268 (31.3)	39,126 (29.8)	37,551 (22.6)	43,194 (18.9)	19,886 (5.4)	15,853 (3.9)	15,167 (3.1)	-10.2
	307-04	19,044 (18.4)	21,380 (16.3)	29,368 (17.7)	40,910 (17.9)	48,196 (13.0)	44,587 (11.1)	47,386 (9.6)	13.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 이상의 분석에서 보듯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상한제 도입으로 민간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을 규제함에 따라 자치단체들이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선심성 예산지원을 증가시켜 왔는데, 특히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민간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

제2절 빈번한 축제개최와 축제예산의 과다

- 행사·축제성경비의 실태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불교부단체의 1인당 행사·축제성경비가 교부단체에 비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불교부단체가 교부단체에 비해 더 많은 축제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기도 시지역을 대상으로 2006-2008년간 축제현황
 - 이 기간 동안 경기도 전체 시지역에서 177개의 축제가 개최되어 1개시당 평균 6.6개의 축제를 개최하였음
 - 경기도 교부단체는 이 기간 동안 115개의 축제를 개최하여 평균 6.4개의 축제를 개최한 반면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62개의 축제를 개최하여 평균 6.9개의 축제를 개최함
- 축제예산규모
 - 분석기간(2006-2008) 동안 경기도 전체 시의 축제예산은 총 508억 48백만원이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인 18개시의 축제예산은 266억 69백만원임
 - 반면 9개 불교부단체의 축제예산은 241억 79백만원으로 경기도 전체시 축제예산의 47.6%를 차지함
-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의 축제 1개당 축제예산

- 교부단체의 축제 1개당 평균 예산은 232백만원이며 불교부단체의 축제 1개당 평균 예산은 390백만원으로 약 1.7배 규모임

〈표 4-2〉 불교부단체 축제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축제예산						축제수(B) (2006-08)
	2006	2007	2008	합계(A)	평균	A/B	
경기시계	12,365	15,195	23,288	50,848	16,949	287	177
교부(시)	7,349	6,977	12,343	26,669	8,890	232	115
불교부(시)	5,016	8,218	10,945	24,179	8,060	390	62
수원	871	680	1,360	2,911	970	416	7
성남	760	960	1,130	2,850	950	317	9
안양	450	450	500	1,400	467	467	3
부천	250	2,983	3,000	6,233	2,078	1,247	5
안산	540	925	1,100	2,565	855	233	11
고양	450	550	340	1,340	447	268	5
과천	1,070	1,050	1,280	3,400	1,133	425	8
용인	405	220	1,765	2,390	797	299	8
화성	220	400	470	1,090	363	182	6

자료: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각년도.

- 경기도 시지역의 축제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보듯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들이 교부단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1개 축제당 약 1.6배의 축제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축제예산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됨

제3절 상대적으로 낮은 세입 자구노력

- 자치단체가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 자치단체의 세입 자구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보통교부세 불

교부단체들이 자체세입확충을 통해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분석함

□ 지방세 연평균증가율

- 분석기간(2003-2008) 동안 경기도 전체 시 지방세 연평균증가율은 9.1%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교부단체 지방세증가율은 이 보다 높은 10.0%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지방세 연평균증가율은 8.5%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 및 전체 시의 교부단체보다 낮은 수준임

□ 지방세징수율을 비교

- 불교부단체의 지방세징수율이 93.91%로 나타나 경기도의 교부단체 지방세징수율 93.41%와 비슷한 수준이나 전국의 교부단체 지방세징수율 95.79%와 비교할 경우 낮은 수준임

〈표 4-3〉 불교부단체 세입 자체노력 분석

(단위: %)

	지방세증가율 (2003-2008)	지방세징수율 (2003-2008평균)	2008년말 지방세 미징수액비율	경상세외수입 증가율(2003-2008)
전체(시)	7.3	95.58	15.2	5.7
교부(시)	6.7	95.79	14.7	6.2
경기 시전체	9.1	93.56	17.0	7.6
경기 교부(시)	10.0	93.41	18.2	11.5
불교부(시)	8.5	93.91	16.1	4.4
수원	5.0	95.58	11.7	8.3
성남	11.8	94.20	14.4	1.6
안양	7.1	93.71	17.7	2.2
부천	5.7	92.20	20.1	4.6
안산	6.3	91.50	23.5	8.0
고양	8.1	92.61	22.5	11.4
과천	7.8	96.13	12.2	5.5
용인	10.2	94.39	16.0	-2.0
화성	17.0	95.31	11.8	19.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 지방세징수액대비 지방세미징수액비율(2008년말 기준)
 - 보통교부세 불교부 市의 경우 16.1%로 경기도 교부 市 18.2%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전체 교부 市 14.7%보다는 높은 수준임
 - 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교부단체에 비해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경상세외수입증가율을 통한 불교부단체의 자체세입 자구노력도
 - 불교부단체의 경상세외수입증가율은 4.4%로 전국의 교부 市 경상세외수입증가율 6.2%보다 낮음
 - 특히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교부 市의 경상세외수입증가율 11.5%에 비해 상당히 낮아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불교부단체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요구됨

- 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증가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대비미징수액비율, 경상세외수입증가율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자체세입 확충노력을 분석한 결과 교부단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부 지표의 경우 더 낮게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를 두고 볼 때 불교부단체들이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4절 높은 기본적 세출소요 비중

- 기본적 세출소요는 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중 기관유지 및 기본적인 공공사무 수행과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당 경비 비율이 높을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경직적인 경비 지출이 많아져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짐
 - 기본적 세출소요비중은 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에서 경상예산(인건비, 경상적 경비)과 채무상환비가 차지하는 비중임

- 전국 시지역의 기본적 세출 수요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2005년 24.5%에서 2008년 23.2%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평균 23.7%임
 -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의 경우에도 2005년 24.5%에서 2008년 23.0%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평균 23.5%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는 2005년 24.8%에서 2008년 25.0%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교부단체보다 높은 수준임
 - 특히 경기도내의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의 기본적 세출수요 비중인 22.7%와 비교할 경우 더욱 높은 수준임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가운데 수원(28.1%), 안양(28.9%), 부천(31.4%), 과천(29.2%)의 기본적 세출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들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의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정상적 지출에 대한 각별한 재정관리가 필요함

〈표 4-4〉 불교부단체 기본적 세출수요 비중

(단위: %)

	2005	2006	2007	2008	평균 (2005-2008)
전체(시)	24.5	23.8	23.2	23.2	23.7
교부(시)	24.5	23.6	23.0	23.0	23.5
경기 시전체	24.0	23.8	23.1	23.1	23.5
경기 교부(시)	23.6	23.0	22.2	22.2	22.7
불교부(시)	24.8	25.4	25.0	25.0	25.0
수원	25.4	26.6	30.1	30.1	28.1
성남	22.5	21.5	19.9	19.9	21.0
안양	32.3	29.4	26.9	26.9	28.9
부천	29.7	32.1	31.8	31.8	31.4
안산	25.5	26.5	27.8	27.8	26.9
고양	26.9	24.9	24.0	24.0	25.0
과천	27.0	29.0	30.3	30.3	29.2
용인	15.0	18.3	15.6	15.6	16.1
화성	18.6	20.5	18.2	18.2	18.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제5절 과다한 업무추진비 지출

□ 업무추진비의 범주에는 기관운영(203-01), 정원가산(203-02), 시책추진(203-03), 부서운영(203-04) 업무추진비가 포함됨

-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재정공시의 공통공시 항목인 주민주요관심항목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기준으로 불교부단체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살펴봄

〈표 4-5〉 불교부단체 업무추진비 현황

(단위: %)

	세출대비 비중 (2002-2008 평균)	연평균증가율 (2004-2008)	동종단체평균대비 (2008기준)
전체(시)	0.18	3.7	
교부(시)	0.18	3.3	
경기 시전체	0.19	7.0	
경기 교부(시)	0.20	8.2	
불교부(시)	0.17	5.7	121.8
수원	0.16	4.9	137.8
성남	0.14	6.5	127.2
안양	0.23	2.7	162.0
부천	0.17	3.2	107.3
안산	0.15	6.5	139.3
고양	0.17	6.0	123.6
과천	0.27	3.6	73.5
용인	0.11	9.9	106.9
화성	0.16	9.3	118.8

자료: 자치단체, 재정공시, 2008년.

□ 자치단체 세출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

- 분석기간 동안 전체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지역 가운데 불교부단체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0.17%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안양과 부천의 경우에는 각각 0.23%,과 0.27%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세출대비 업무추진비의 비중이 높음

□ 분석기간 동안 업무추진비의 연평균 증가율

- 분석기간 동안 보통교부세의 교부단체의 경우 평균 3.3%의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불교부단체의 경우 이 보다 높은 5.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진단시 참고가 되는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할 경우 대부분의 불교부단체들이 더 많은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요구됨

제 5 장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관리방안

- 제1절 기본방향
- 제2절 자율적 재정통제 기반의 확충
- 제3절 민간이전비의 운영시스템 개선
- 제4절 특별재정보전금·가산교부금제도의 확대 실시
- 제5절 지방재정 수지악화에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강화



제5장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관리방안

제1절 기본방향

-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 재정의 확장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사회복지비 부담 증대 등으로 인해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소비·소득세의 도입에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국세(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의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세입여건은 악화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낭비성 재정지출 확대와 축제·행사성 경비의 증대 및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분산투자 등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마저 저하되고 있음.
- 민선자치이후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이란 큰 흐름 속에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의 이양 등을 통한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이 시기별로 연계됨이 없이 분리되어 추진됨에 따라 그 정책효과가 제대로 기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중앙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방안 강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비춰져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을 위협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의 확충과 세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에서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속시키는 근본적 원인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통제 및 유인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자치단체장의 예산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감사부서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함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상급기관의 통제가 미흡함.
 - 즉,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급기관(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중·하위직 위주로 감사가 실시되고 단체장의 정책집행이나 재정비리를 밝혀내는데는 못 미치고 있음.
 - 주민들의 직접통제가 제도화되지 않고, 그 활동이 조직화·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 즉,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거직(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미흡한 현실에서, NGO를 비롯한 시민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음.
 - 지방재정의 공개가 사후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심의를 받기는 하나, 일반 주민에게는 예산이 이미 편성된 이후에 그 내용이 공개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주민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조치들이 있었음(<표 5-1> 참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기대하고 있음.
- 상기의 요인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건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흡할 경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의 경우는 보통교부세 배분시에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으나, 불교부단체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임.

〈표 5-1〉 현재 운영중인 지방재정관리제도

구 분	지방재정관리제도	법 적 근 거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투·융자심사제도 ■ 지방비부담 협의제도 ■ 지방채발행승인제도 ■ 사업예산제도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제22조·제23조·제2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5조
예산집행 및 결산과 관련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프로그램)예산제도 ■ 복식부기회계제도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 지방재정인센티브·교부세감액제 ■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공개확대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54 ~ 57조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법 제39조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재정운영의 실태를 통한 재정책임성을 분석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비절감과 자구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건전재정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그런데, 제2장~제4장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분석과 문제점에서 보듯이 불교부단체의 경우 대체로 동급의 교부단체에 비해 세입·세출의 증가율은 낮고, 1인당 세입·세출의 증가율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재정운영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첫째, 대부분의 불교부단체가 교부단체와 비슷한 수준의 경상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고, 최근 세출대비 경상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불교부단체의 경상비 규모가 교부단체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경상비 규모의 증가가 큰 점이 자칫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음
 - 둘째, 민간이전비 중 경상이전비의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교부단체에 비해 민간경상이전 증가율(평균 25.1%)이 매우 높고, 1인당 민간경상이전 증가율(24.5%)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낭비적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셋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행사·축제성경비의 세출대비 비중은 전국 자치

단체 수준과 비슷하지만, 이들 경비 규모는 불교부단체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치단체간 재정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음.

- 넷째, 경상경비 절감, 청사 적정면적, 지방세 징수, 탄력세율 운영 등 재정운영의 자체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자칫 채무증대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 관리는 가능한 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통제 보다는 자체적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이러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절을 달리하여 제시함.
 - 첫째, 재정분권의 수준이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자율적 통제기반을 더욱 확충하여 불교부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지방재정관리(통제)제도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선심성·전시성 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들 경비의 총액 실링제를 도입하여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불교부단체의 경우 민간이 전경비 중 경상이전비는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재정규모나 경상비의 증가에 비해 급격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부문에 대한 선심성 예산보조로 인한 재정 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셋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방만한 재정운영의 역제를 위하여 서울시의 가산교부금(조정교부금), 경기도·경남도의 특별재정보조전금(재정보조전금) 배분방식과 같이 무조건 재정결합금액의 일정비율을 채워주는 방식을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최근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비 지출이 급증하여 건전재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재정수지의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미래의 지방재정의 초과수요 발생에 따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자율적 재정통제 기반의 확충

-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관리(통제)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제도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통제(관리) 수단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제가 미흡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내실있게 운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표 5-2>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통제(관리)제도

구분	지방재정통제(관리)제도		주요 내용
주민	주민참여 및 감시(주민참여예산, 재정운영상황 공개(재정공시))		주민통제 및 재정정보 공개
지방 및 중앙	사전적 통제 (지방: 자율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재정낭비요인 기준제시 및 예산편성정보제공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초과발행	중앙정부 승인+지방의회결
		중기지방재정계획	집행부 수립 (지방의회 보고)
		투융자심사	일정규모 이상
	사후적 통제 (중앙: 감독)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컨설팅)	재정운영 상황 분석 및 재정안정성 낮은 단체 대상 재정지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 적용	보통교부세 산정시 가감 반영
지방교부세 감액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제재	

- 또한 2005년에 도입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가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나 한도액을 증액한 조치, 사회복지비 확대를 위함 보조금 지원 증대에 따른 지방비부담의 압박 등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곤란하게 되는 측면도 있음
- 지방자치제 하에서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혜택에 대하여 적절한 재정부담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부담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이란 공공자원의 사용과 획득에 있어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고, 법령 또는 예산을 준수하는 등 의무를 완수하는 것을 의미함.
- 다시 말해 지방재정의 책임성(self-accountability)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운영에 대해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치단체의 장이 자기책임 하에 자체재원을 징수하여 사용하고 그에 대해 주민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임.
- 따라서 재정의 책임성이란 측면에서만 보면, 자체세입만 가지고 재정지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 이 경우 지역간에 공공서비스 공급에 격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역간 공공서비스공급의 지나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 만약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지는 재정운영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됨.
- 따라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건전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 재정통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입통제 중심의 예산을 경제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성과주의예산 및 성과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사업예산제도가 형식적 운영을 탈피하여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여 선심성·전시성 예산편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지방재정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와 주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하여는 자치단체 장이 재정서비스에 대한 약속과 이행의 정도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을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공시제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임. 특히, 선심성·전시성 예산에 대한 공시항목의 신설을 통해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과학적인 재정운영, 회계감사 확대, 재무관리 표준화 등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종합적인 재정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증대 및 외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통합재정정보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넷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한계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특히, 선심성·전시성 관련 예산의 편성을 예방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재정계획-투융자심사-예산편성간의 업무연계를 위한 협의조정체계를 확립하여 관련 업무간의 철저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기편성된 예산의 운용과 재정관리의 상태를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재정분석 및 평가수단을 통해 건전재정을 유도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운영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화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하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경비절감 및 예산낭비요인 제거, 세입충당노력, 불건전한 재정 집행 방지 등에 의해 그 결과에 따라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치재정권의 제한이라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방향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①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정착
 - ② 지방재정 분석의 지표개선 및 재정건전화 계획의 실효성 제고
 - ③ 통합 지방재정 분석 시스템 운영방안
 - ④ 지방재정 운영 관련 지방의회 심의기능 강화

- ⑤ 지방재정 운영 관련 전산화 및 공개 확대
 - ⑥ 지방재정 집행 점검회의의 내실있는 운영
 - ⑦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 강화 및 지방교부세 감액제 적용항목확대
- 이러한 지방재정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자치단체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행태·제도적 변화와 원가·비용의 마인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통상적·점증적 방법에 의한 기존의 예산절감이 아니라, 구조적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으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중앙 및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지시·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 자치단체 - 주민, 자치단체 상호간 지속적 의사소통과 협력 추진과 주민이 실질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례와 제도·시스템 변화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제3절 민간이전비의 운영시스템 개선 : 선심성 경비의 총액실량제 도입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기반이 취약하고, 재정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심성·행사성 경비 등의 경상경비를 과다 지출하게 되면 재정압박 내지 재정위기 상황에 항상 노출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경상경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재정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총세출 규모의 증가율보다 경상경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가?
 - 경상경비 중 특히 예산절감이 요구되는 선심성·행사축제성 경비는 경상경비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가?
 - 대표적 선심성 경비인 민간지원경비의 예산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행사·축제성 경비의 예산 규모 및 증가율이 실제로 경상경비 중에서도 아주 높게 나타나는가?

□ 제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불교부단체의 경우 민간이전경비 특히 경상이전비는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재정규모나 경상비의 증가에 비해 급격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부문에 대한 선심성 예산보조로 인한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경비의 성격이 유사한 민간경상/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이 별개 통계목으로 세분되어 있어 예산편성시 혼란 및 중복지원 우려
 - 민간경상보조(307-02)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민간행사보조(307-04)는 “행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목구분이 모호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의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 총액실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307-03)으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부족분 또는 추가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법·중복지원되고 있음
-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에 대한 법정기준이 없어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 법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도한 지원요구로 지방재정 부담 과중
 - 지방자치단체간/사업부서간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액과 자기부담비율이 상이하 여 지원을 받고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민간경상/행사보조의 지원수요 폭증과 일몰제·한도액 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민간이전비제도의 운영에 실무적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 일몰제와 한도액 도입취지는 공감하나, 지원기간이 3년이 경과한 일몰제 대상 사업 확인과 성과평가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형식적 운영
 - 현실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중단은 어려운 반면 신규 지원수요는 폭증하여 재정부담 가중
 - 담당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별로 자체평가를 하기도 쉽지 않고 평가자료 또한

부실하고 온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으로 편성심의자료로 활용하는 한계가 있으며, 성과평가에 따른 일몰제 적용으로 지원중단된 사례는 거의 없음

□ 그러나, 민간이전경비의 성격과 기능은 개별 경비항목과 사업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³⁾에 의하면 이들 경비의 정책적 의의와 순기능이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음.

- 첫째, ① 시장과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거나 거래비용 등으로 비효율적인 분야, ② 지역주민의 선호, 사회경제적 특성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민간이 유리한 분야, ③ WTO 등 경제질서 재편으로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④ 문화예술, 체육, 사회복지 등 외부효과 창출기능이 우수한 경우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혹은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예방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외부효과에 대한 내재화 기능이 발휘됨.
- 둘째, 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하에 효과적이고 적정수준의 행정서비스 공급, ② 지역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자생적 발전능력 제고, ③ 민간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파트너십 촉진 등에 의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 및 거버넌스(governance)를 촉진시킴.
- 셋째,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유리하므로 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으로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고, ② 민간 주도하에 창의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됨.

□ 그러나 민간이전비의 급증문제는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포퓰리즘 예산의 묵인으로 이어져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 경비의 편성목 및 지원기준의 모호성, 집행·정산의 투명성 미흡,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의

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강태구(20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7(2), 한국법정책학회 ; 조민경·김렬(2007),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한정치학회보」 15(1), 대한정치학회 ; 조기현·하능식(2008),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발표 논문 참조.

미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심성·전시성 경비의 총액 실링제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로 함

-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선심성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민간이전경비의 개선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민간경상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의 5개 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민간이전경비 항목간의 합리적 관계설정, 심의위원회 운용방식 및 조례 등 관련 법규·제도의 연계, 성과평가 및 정책환류 강화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이러한 기본방침 하에 개별 민간이전경비의 도입취지 및 정책목적의 재설정,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의 합리화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함.

1. 예산과목 구분의 합리화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운용·관리에서 초래되는 대부분의 문제점은 불합리한 과목구분에 기인하고 있음.
 - 즉, 유사 보조사업에 대한 변칙·중복지원, 지원대상의 부적절한 선정, 예산팽창 등 상당수 핵심적인 문제들은 양 과목의 분리에서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들 경비의 편성과목의 분리운영 및 지원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과목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통합과목 기준으로 지원금액이나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한제를 도입·운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장기적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상당수가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3개 과목을 통합하되, 사회복지사업을 분리하여 ① 사회복지 민간보조와 ② 기타 민간경상보조라는 2개 과목으로 운용하도록 함.

〈표 5-3〉 민간지원경비 과목구분의 개편(안)

개편(안)	현행 과목·사업
사회복지 민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경보·사회단체보조·민행보의 사회복지사업 지원경비 • 민간자본보조의 사회복지 지원경비
민간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경보+사회단체보조+민행보(사회복지 제외)

2. 민간이전비 심의기구의 설치 및 기능강화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보조금의 지원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한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되,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의 민간이전경비는 심의위원회제도를 도입·운용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담당부서 차원에서 편성·지원됨에 따라 편중·편파지원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미흡하고, 일회성 지원에 의한 성과부진, 사후관리 부실, 합리적 통제장치 결여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역시 NGO,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부진하거나 형식적인 심의로 그 역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사업 과다,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심의 검토여건도 불충분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지원경비의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① 통합과목의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의 명시, ② 심의위원 확대(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의무화), ③ 수시분폐지 및 정기적 심의 강화, ④ 심의기준 객관화·구체화(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구분), ⑤ 회의록, 지원대상·지원액, 세부집행실적 등 재정공시 대상의 의무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3. 민간이전비 운영의 합리화 및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법적근거 마련

-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8호)의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되, 민간지원경비 전용 결제카드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집행·정산 설명자료의 제작·배포를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한 서식의 통일화, 집행지침 및 통일된 서식 등을 토대로 교육자료 제작·배포 및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자료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민간경상보조사업자도 공익성·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비율 법적근거 마련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 의무화시 무분별한 지원요구 방지로 지방재정의 부담 감소와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함 .

4. 민간지원경비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 현재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는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간 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처럼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체육단체 등 과거 정액단체와 과도한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의 자립능력 및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즉, 일회성 지원을 억제하고 3년 내외의 보조사업 계약제를 도입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원규모는 사업평가와 연계·운용하고, 매년 성과평가 실시 또는 계약종료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하도록 함.
 - 그리고 계약제·일몰제의 안착, 엄정한 집행·정산을 위해서는 사업평가제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함.

- 따라서 평가주체는 소관부서로 하되, 예산부서 확인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재정공시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며, 사업평가시에 일정등급 이상의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사업평가 대상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분리하여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함.
- 한편,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총액한도 실링제 도입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제도의 적용 등 정책환류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한도액 초과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수요에 대한 감액제를 적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역시 한도액 초과단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 그리고 정보공개 대상·수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원리 관점에서 상한제와 같은 중앙정부의 직접통제방식 보다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기규율 혹은 주민에 의한 통제방식이 오히려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민간지원경비 관련 보조사업자의 선정·집행·성과 등 전반에 걸친 정보공개가 중요하며 단기적으로 재정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월별 집행내역 등 나열식 집계·공시를 지양하고, 과목별 한도액 및 지원액, 과목별 주요 보조사업자 지원액, 동종단체 비교, 최근 5년간 증가율 및 세출대비 비중 등으로 재정공시 항목을 확대하도록 함.

제4절 특별재정보전금·가산교부금제도의 확대 실시

- 지방재정 운영실태를 통한 재정책임성을 분석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비 절감과 자구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제도는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제도가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재정통제장치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제도의 보완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제도가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 배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의 운영을 모색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광역단체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유인 방안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건전재정운영 평가에 의한 가산교부금배분과 경기도와 경남도에 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재정보조금 배분이 있음
-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에는 자치구의 건전재정운영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교부금을 배분하는 가산교부금제도가 있음
-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고도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자치구에 대하여 가산교부할 수 있음
 - 가산교부금액은 자치구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배분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음
 - 가산교부의 경우 재정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서도 교부를 하기 때문에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함

〈표 5-4〉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를 위한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건전성	경상경비비율	$\frac{\text{경상경비}}{\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경상경비증감율	$\frac{\text{현년도경상경비} - \text{전년도경상경비}}{\text{전년도경상경비}} \times 100(\%)$
	인건비비율	$\frac{\text{인건비}}{\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인건비증감율	$\frac{\text{현년도인건비} - \text{전년도인건비}}{\text{전년도인건비}} \times 100(\%)$
안정성	지방세징수율	$\frac{\text{현년도실제수납액(지방세 실제수납액} - \text{과년도분 실제수납액)}}{\text{현년도징수결정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text{과년도분 징수결정액)}} \times 100(\%)$
	경상세외수입안정도	$\frac{\text{현년도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 - \text{전년도경상세외수입실제수납액}}{\text{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times 100(\%)$
	경상세외수입징수율	$\frac{\text{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text{현년도 경상세외수입 징수결정액}} \times 100(\%)$
효율성	행사·축제경비 목표대비비율	$\frac{\text{현년도경비비율}}{\text{직전3년평균비율}} \times 100(\%)$
	민간이전경비 목표대비비율	$\frac{\text{현년도민간이전경비비율}}{\text{직전3년평균비율}} \times 100(\%)$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투자비증감율	$\frac{\text{현년도사업비} - \text{전년도사업비}}{\text{전년도사업비}} \times 100(\%)$
	연말지출비율	$\frac{\text{연말(11월~12월)지출원인행위액}}{\text{세출결산액}} \times 100(\%)$

- 도본청이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을 위해 재정보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보전금 배분시 기초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 정도를 반영하지는 않음.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보전금 배분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재정보전금을 배분하고 있음
 - 재정결함금액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단체 중 당해 시·군이 징수한 도세의 30%(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50%)에서 당해연도에 도가 배분한 일반재정보전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을 합한 금액의 차액을 의미함
 -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보전금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임
 - 특별재정보전금의 배분방식을 살펴보면, 특별재정보전금재원 총액을 재정결함금액이 있는 시·군의 재정결함금액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곱하여 산정·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 금액의 70%를 우선적으로 배분함
- 이상의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방식에서 보듯이 현재의 재정보전금 배분방식에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재정결함금액의 일정비율을 배분하고 있음
 - 이러한 배분방식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여 재정적 여유를 제공하게 됨
 - 따라서 불교부단체의 이러한 재정적 여유가 선심성·전시성 예산 집행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별재정보전금 배분시 현재와 같이 무조건 재정 결함금액의 일정비율을 채워주는 방식을 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가산교부금 배분기준과 같이 특별재정보전금 배분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운영 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반영함
 -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지표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진단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제5절 지방재정 수지악화에 대비한 위기관리체계 강화

- 1995년 민선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재정의 기반 확충은 별로 이루어지 않은 채, 지역주민의 욕구 분출,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재정의 상태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민선자치이후 취약한 재정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운영이 시정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있고,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의 취약성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재정통제로 인해 자율적 재정운영을 곤란케 하고 있다는 입장도 있음.
 - 이처럼 지방재정의 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예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수지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초과수요 발생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비 지출이 급증하여 건전재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재정수지의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 관점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등 공사·공단의 부채문제('08년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 : 47.3조원)를 포함할 경우 그 심각도는 더욱 높은 수준에 있으며, <표 5-5>에서 보듯이 국고보조금이 급증

하고 있고, 국고보조율의 인하('05년 67.7% → '10년 62.5%)로 인한 지방비부담이 크게 늘어나 재정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음

〈표 5-5〉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세 입 합 계	717,504 (100.0)	786,877 (100.0)	865,209 (100.0)	984,446 (100.0)	1,094,510 (100.0)	1,134,229 (100.0)
국고보조사업비	230,391 (32.1)	261,525 (33.2)	319,721 (36.9)	350,107 (35.6)	417,716 (38.1)	467,410 (41.2)
- 국고 보조금	153,502	183,316	209,006	227,670	265,387	292,186
- 지방비부담액	73,337	73,885	96,721	122,437	152,329	175,224
- 지방비부담율	32.3	28.7	31.6	35.0	36.5	37.5

자료: 행정안전부(2010).

- 한편,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적 재정부담의 증대는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음. 급격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지자체의 자원부담을 기중케 하므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지자체의 자원부담 완화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재정적 과제를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첫째, 지방재정이 구조적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준칙(fiscal rule)을 마련하도록 함
 - 영국의 golden rule과 같은 공공부문 경상수지(current balance)의 균형과 지속 가능한 투자의 원칙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등의 차입은 투자재원을 마련 하는데 활용하고, 경상지출에의 충당을 금지하여 적자규모를 제한하도록 함.
 - 둘째,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재정수요나 포퓰리즘(공약) 예산수요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재정지출에 앞서 수입의 확보가 우선적 고려 되도록 함
 - 즉, 신규 의무지출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과 별도의 재원대책

- 의 제시를 의무화한 수입 내 지출원칙인 pay-as-you -go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수요나 가용재원의 초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부담의 축소와 거시적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함
 - 이를 위해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는 제반환경의 개선과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함 : (예시) 사업예산제도의 정착 및 예산사업 성과평가 강화

제 6 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1. 불교부단체의 재정운영 특징

□ 세입·세출의 구조와 추이

- 대부분의 불교부단체가 동급의 교부단체에 비해 세입·세출의 증가율이 낮고, 1인당 세입·세출의 증가율도 동일한 현상을 보임

□ 경상비의 규모와 추이

- 용인, 화성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부단체가 교부단체와 비슷한 수준의 경상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세출대비 경상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불교부단체의 경상비 규모가 교부단체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임

□ 민간이전비의 규모와 추이

- 교부단체의 민간이전비의 증가율(16.2%)에 비해, 불교부단체는 매우 높은 증가세(22.6%)를 보이고 있고, 세출 대비 민간이전비의 비중은 교부단체에 비해 상당히 낮음
- 불교부단체의 민간경상이전 증가율(평균 25.1%)에 비해 교부단체는 상당히 낮은 증가세(20.1%)를 보이고 있으나, 세출대비 민간경상이전 비중은 오히려 불교부단체가 낮은 수준(5.1%)임. 이 때 세출규모를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대부분의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경상이전 증가율(24.5%)이 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경상이전 증가율(1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불교부단체의 민간자본이전 증가율(평균 17.6%)에 비해 교부단체는 상당히 낮은 증가세(12.1%)를 보이고 있으나, 세출대비 민간자본이전 비중은 오히려 불교부단체가 낮은 수준(2.7%)임. 이 때 세출규모를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대부분의 불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자본이전 증가율(17.0%)이 교부단체의 1인당 민간자본이전 증가율(1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행사·축제성 경비의 규모와 추이

- 불교부단체의 행사·축제성경비의 증가와 세출대비 비중은 전국 자치단체 수준과 비슷하지만, 일부 불교부단체의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재정운영의 자체노력

- 불교부단체 중 대다수 시는 교부단체에 비해 경상경비절감을 위한 자체노력을 덜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됨
- 안산을 제외한 모든 불교부 시들이 적정면적 대비 17~51%를 초과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 불교부 시의 지방세 징수 증대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음(지방세 징수율 : 불교부 시 93.91%, 교부 시 95.79%)
- 주민세(개인균등할)의 탄력세제 운용(2008년)에서 불교부단체의 기준세액대비 적용세액비율(0.65)이 교부단체(0.79)에 비해 더 낮아 불교부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액을 적용하고 있음

2. 불교부단체별 재정운영 특징

가. 수원시

- 세출대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은 전국 수준(0.7%)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1.4%)임

나. 성남시

- 불교부단체 중에서 민간이전비의 증가가 매우 높음(연평균 27.6%)
- 민간자본이전의 증가율(37.1%)과 1인당 민간자본이전경비의 증가율(30.1%)은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세출대비 민간자본이전비 비중(1.3%)은 매우 낮은 수준
- 전국 시의 행사축제성경비 증가율(17.3%) 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27.0%)
- 경상경비 절감은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

다. 안양시

- 세출대비 높은 경상비 비중(59.3%)은 보이고 있음
- 민간경상이전의 증가율(26.3%)과 세출 대비 비중(6.8%)는 매우 높게 나타남
- 경상경비 절감은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
- 시청사의 적정면적(2008년 기준) 대비 51%를 초과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라. 부천시

- 세출대비 높은 경상비 비중(57.5%)은 보이고 있음
- 민간자본이전의 증가율(31.3%)과 1인당 민간경상이전경비의 증가율(30.1%)도 매우 높게 나타남
- 전국 시의 행사축제성경비 증가율(17.3%) 보다 높은 수준임(23.1%)
- 경상경비 절감은 위한 자체 노력이 미흡
- 시청사의 적정면적(2008년 기준) 대비 47%를 초과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수준(교부단체 95.79%, 불교부단체 93.91%)에 비해 낮게 나타남(92.2%)

마. 안산시

- 세출대비 높은 경상비 비중(50.0%)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수준(교부단체 95.79%, 불교부단체 93.91%)에 비해 낮게 나타남(91.5%)

바. 고양시

- 불교부단체 중에서 민간이전비의 증가가 매우 높음(연평균 28.7%)
- 민간경상이전의 증가율(30.3%)과 세출 대비 비중(7.1%)뿐만 아니라 1인당 민간 경상이전경비의 증가율(28.2%)도 매우 높게 나타남
- 전국 시의 행사축제성경비 증가율(17.3%) 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32.8%)
-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수준(교부단체 95.79%, 불교부단체 93.91%)에 비해 낮게 나타남(92.61%)

사. 과천시

- 세출대비 높은 경상비 비중(50.4%)은 보이고 있음
- 전국 시의 행사축제성경비 증가율(17.3%) 보다 높은 수준임(23.3%)
- 세출대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은 전국 수준(0.7%)에 비해 아주 높게 수준(1.9%)임
- 시청사의 적정면적(2008년 기준) 대비 73%를 초과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 2008년 기준으로 주민세(개인균등할)의 기준세액의 49%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아. 용인시

- 불교부단체의 세출대비 평균 경상비 비중(46.5%)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33.1%)
- 전국 시의 행사축제성경비 증가율(17.3%) 보다 아주 높은 수준임(41.2%)

- 시청사의 적정면적(2008년 기준) 대비 50%를 초과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지방채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2006-2009년 연평균 증가율 18.8%)

자. 화성시

- 불교부단체의 세출대비 평균 경상비 비중(46.5%)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38.9%)
- 불교부단체 중에서 민간이전비의 증가가 매우 높음(연평균 27.4%)
- 민간경상이전의 증가율(38.1%)과 세출 대비 비중(7.1%)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전국 시의 행사축제성경비 증가율(17.3%) 보다 아주 높은 수준임(45.5%)
- 시청사의 적정면적(2008년 기준) 대비 42%를 초과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지방채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2006-2009년 연평균 증가율 29.6%)

제2절 정책건의

- (1) 재정분권의 수준이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자율적 통제기반을 더욱 확충하여 불교부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지방재정관리(통제)제도가 실질적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입통제 중심의 예산제도를 경제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지방재정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와 주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재정공시제도를 더욱 강화함.
 - 과학적인 재정운영, 회계감사 확대, 재무관리 표준화 등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기편성된 예산의 운용과 재정관리의 상태를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재정분석 및 평가수단을 통해 건전재정을 유도하여야 할 것임.
- (2) 선심성·전시성 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들 경비의 총액 실링제를 도입하여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불교부단체의 경우 민간이전경비 중 경상이전비는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재정규모나 경상비의 증가에 비해 급격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부문에 대한 선심성 예산보조로 인한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민간경상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의 5개 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민간이전경비 항목 간의 합리적 관계설정, 심의위원회 운용방식 및 조례 등 관련 법규·제도의 연계, 성과평가 및 정책환류 강화에 대한 기본방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기본방침 하에 개별 민간이전경비의 도입취지 및 정책목적의 재설정,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의 합리화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되, 최근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민간경상이전비(307-02, 307-03, 307-04)를 대상으로 총액실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3)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방만한 재정운영의 억제를 위하여 서울시의 가산교부금(조정교부금), 경기도·경남도의 특별재정보전금(재정보전금) 배분방식을 보완하여 무조건 재정결함금액의 일정비율을 채워주는 방식을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운영과 연동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가산교부금 배분기준과 같이 특별재정보전금 배분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운영 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반영함
 - 불교부단체의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지표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진단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4) 최근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비 지출이 급증하여 건전재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재정수지의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미래의 지방재정의 초과수요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이 구조적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준칙(fiscal rule)을 마련하도록 함. 즉, 영국의 golden rule과 같은 공공부문 경상수지(current balance)의 균형과 지속가능한 투자의 원칙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등의 차입은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 경상지출에의 충당을 금지함.
 - 사회복지분야의 새로운 재정수요나 포퓰리즘(공약) 예산수요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재정지출에 앞서 수입의 확보가 우선적 고려되도록 함. 즉, 신규 의무지출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과 별도의 재원대책의 제시를 의무화한 원칙인 수입 내 지출원칙(pay-as-you-go)을 준수하도록 함.
 - 인구구조의 변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수요나 가용재원의 초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부담의 축소와 거시적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함.

참 고 문 헌

강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7(2), 한국법정책학회, 2007.

김선기, 「향토자산 활용 지역축제의 마케팅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김종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혁성과와 발전방향”, 「지방재정」 통권 11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2.

박형수·류덕현,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이기우, “중앙과 지방의 관계재설정과 주민참여 : 주민소환제도의 개선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

이상용,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전시성 예산의 통제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 2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0.

조기현·하능식,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운용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발표 논문, 2008.

조민경·김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한정치학회보, 15(1), 대한정치학회, 2007.

지방자치단체 재정난극복 TF,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국회예산정책처,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2009

_____,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지방재정분석)」, 2006·2007

문화관광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각년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각년도.

_____,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각년도.

_____,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10.

_____,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_____,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2010

<http://lofin.mopas.go.kr>